功利主義의 財政理論에 關한 硏究

——功利主義와 租稅原理를 中心으로——

鄭 壹 和

目 次

一. 序 論
二. 功利主義의 時代的 背景과 一般原理
1. 時代的 背景
2. 一般原理
三. 功利主義와 平等犧牲說
四. 功利主義와 最小犧牲說
五. 結 論

一. 序 論

經濟學은 人間의 經濟行爲와 이에 隨伴하여 생기는 經濟現象을 對象으로 硏究하는 社會科學의 一分科的科學註1)이라고 할 수 있다. 經濟行爲는 人間이 그들의 欲望充足을 위하여 物質的財貨를 獲得使用하는 行爲를 말하는 것이므로 人間은 單獨 孤立的인 生活을 營爲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 集團을 形成하여 生活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成員의 經濟的行爲도 相互 聯關性을 가지며 同時에 錯雜하고 따라서 複雜多樣한 經濟現象이 나타나는 것은 必然的이 아닐 수 없다. 經濟學은 즉 이와같은 經濟現象을 硏究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經濟學은 希臘時代의 古代로 부터 論議되어 온 것이나 그 內容은 今日의 經濟學과는 極히 相異한 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科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一個의 Kunst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하나의 科學으로서 成立하게 된 것은

註 1) Richard Theodore Ely; Outline of economics, (U. S. A.)(1909) (Revised Edition) pp. 3—15.
R. D. Richards; Groundwork of Economics. (London, Univ. Tutorial Press L. D.) (Second ed. 1935) pp. 1—7.
Karl Diehl; Theoretische Nationalökonomie, Bd I. Einleitung in die Nationalökonomie, (1916.) 1. Kapitel. Der Gegenstand der nationalökonomischen Wissenschaft. 2. Kapitel. Die Nationalökonomie als Teil der Sozialwissenschaft. 參照. 其他 大部分의 學者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

重農主義(Physiocratie)가 擡頭한 以後의 Adam Smith(1723—1790)時代이다. 그런데 科學으로서 成立한 經濟學은 Adam Smith를 始祖로 하는 英國의 古典學派로부터 出發하여 獨逸歷史學派와 어느 意味에서는 古典學派의 復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오오스트리學派 및 現代構造經濟學派등등으로 發展하였고 그 研究方法에 있어서도 各各 相異하여 古典學派와 오오스트리學派는 主로 演繹法을 取하는가 하면 獨逸歷史學派는 歸納法을 使用하고 있으며 現代經濟學派에서는 徹底한 統計的 方法 또는 混合的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이와 같이 經濟學은 科學으로 成立된 以來 數多한 方法論上의 差異를 露呈시켜 왔던 것이다. 註2)

그런데 本稿에서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저 하는 것은 特히 古典學派에 屬하는 Jeremy Bentham(1748—1832),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Manual of Political Economy, 1793. John Stuart Mill (1803—1873),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2 Vols, 1844. On Liberty, 1859. Utilitarianism, 1863. 등등을 中心으로 하는 그 功利主義的 經濟學의 歷史的 位置를 吟味하고 特히 그 財政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財政學史上의 租稅理論의 根據를 研究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功利主義에 立脚한 租稅理論의 根據를 究明하기에 앞서 먼저 財政學의 一般槪念을 簡單히 要約해 봄으로써 本稿에서 研究對象으로 하고저 하는 이른바 功利主義에 立脚한 租稅理論의 範圍와 그 內容에 대한 問題를 提起하고 저 한다

(1) 財政學은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經濟——特히 財政에 關한 理論을 研究하는 學問이라고 할 수 있다. 財政現象은 經濟現象의 一樣相이며 財政學은 本

註 2) Richard Theodore Ely;—ibid., Book I, Introduction, 參照.
Karl Diehl; ibid., 1. Kapitel, 參照.
ERic Roll: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946), N.Y. Prentice-Hall, IN C.I.Introduction, 參照.
Lewis H. Haney;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949), N.Y. The MacMillan Co. A. General Introduction, 參照.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890,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
M. Dobb;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 1937.
中山伊知郎; 經濟學一般原理(昭和19年).
大內兵衛; 經濟學(昭和26年).
舞出長五郎; 經濟學說史槪要, 上卷(昭和12年).
杉本榮一; 近代經濟學史(昭和28年).
Salin Edgar; Geschichte der Volkswirtschaftslehre. Kap. I. 以下.
崔虎鎭; 經濟原論

來 經濟學의 一部를 形成하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는 異論이 많으나 단지 財政學은 그 自體의 特別한 研究發達에 따라서 하나의 獨立科學을 構成하게 된대 不過하다.

(2) 國家나 公共團體는 왜 經濟生活을 하는 것인가. 왜 그것은 存在하며 또 發達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와같은 課題는 財政學에서 다룰 問題가 아니다. 이들은 政治學의 問題로 되거나 國家學의 研究問題로 될 것이다. 財政學은 오로지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存立發達해야 할 것으로서 그 經濟生活을 持續하여야 하는 手段, 말하자면 公共經濟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研究하는 것이다. 즉 國家는 그 獨立的 面目을 維持하기 위하여 國家的 需要를 充足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個人的 需要의 滿足과는 異質的인 것이다. 國防을 위해서는 陸·海·空軍도 必要하며 安寧秩序를 위하여서는 警察도 必要하다. 그리고 司法裁判에도 없어서는 안되며 또 國民의 福利增進을 위해서는 教育을 普及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農工商의 產業도 振興시켜야 하며 또 交通 通信의 事業도 擴張시켜야 한다. 이와같이 國家나 公共團體가 해야 할 事業은 漸次的으로 增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施設을 어떻게 整理할 것인가를 財政學에서 다루어 져야 할 問題이다.

(3) 國家는 一定한 領土에 있어서 國民에 의하여 支持되고 있고 公共團體는 一定한 地域에 있어서 住民에 의하여 支持되고 있다. 더구나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의 名目下에 있어서 國防이나 教育, 產業, 交通, 그 어느 것이나 그 施設을 하기 위하여서는 各種의 財貨와 用役이 必要하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或은 個人에게 代價를 支拂하고 얻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一般的으로 古代·中世國家를 除外하고 近代資本主義 國家에 의하여서 認定되고 있는 私有財產制度下에 있어서는 不可避한 事實이다. 또한 兵役의 義務를 國民에게 負擔케하고 더욱 租稅賦課徵收에 의하여 諸般施設에 必要한 資源을 얻어야 할 경우가 있고 더구나 이러한 國家의 需要와 그 充足과의 經濟生活은 混雜해서는 안되며 統一되고 組織化된 秩序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財政은 一般個人經濟와는 異質的인 各種의 特色을 가지고 있다.

財政은 이와같이 個人經濟와 相異하나 그것은 統一的單獨經濟이며 國民經濟나 世界經濟와 같은 綜合經濟가 아닌 點에 있어서는 兩者가 同質性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또한 經濟人格으로서 經濟原則에 依據하여야 할 것과 같은 것도 恰似하다. 뿐만 아니라 財政은 歐羅巴에 있어서는 中世의 帝王 또는 諸侯의 經濟에서 發達해 온 것이다.

(4) 國家施設에 대한 經費의 問題如何를 研究하는 것은 經費論이다. 그에 따라서 收入論이 問題된다. 租稅 其他의 問題다. 또한 財源의 不足에서 오는 公債論의 問題가 提起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財政이 實質的으로는 豫算과 決算의 形式으로 나타난다. 形式的으로 財政을 본다면 財務論

으로서 研究될 수도 있다. 註3)

上述한 바와 같이 「財政이라는 것은 公共團體가 必要로 하는 手段의 獲得 및 使用을 위하여 하는 計劃的이고 秩序있는 經濟」라고 할 수 있으며 또는 「公的 物質 및 非物質의 生產을 위한 手段의 調達과 準備에 向하는 方策, 行爲, 施設의 總稱」이라고도 할 수 있다. 註4)

이와 같은 財政은 人間이 社會生活을 基礎로 하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 즉 强制社會體의 個別的 經濟活動은 必然的으로 財貨의 强制獲得을 要求한다. 이러한 獲得을 圖謀하고 財政學上 極히 重要한 租稅分配의 問題가 提起된다. 筆者가 여기서 分析하려고 하는 功利主義의 財政理論은 이와 같은 租稅分配를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力說하는 功利主義哲學註5)에 의해서 合理的으로 決定하려는 것이다.

元來 財政은 强制獲得의 原理로서 各種의 理論的 說明이 試圖되어 왔다. 그中 利益說, 能力說, 犧牲說等이 있다. 利益說은 交換說이나 國家勤勞費說과 同一範

註 3) Dalton; Public Finance, (1924), Chap. Ⅰ. Ⅱ
Emill Sax; Grundlegung der theoretischen Staatswirtschafts. Kap. Ⅰ.
J. H. Burton;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uthorities,(1934) London, Chap. Ⅰ. Ⅱ.
木村元一; 財政學: その問題領域の發展(昭和24年) 參照.
大內兵衛; 財政學大綱: 上卷(昭和5年) 參照.
大畑文七; 社會的財政學. 第1編(昭和5年) 參照.
崔虎鎭; 財政學. 緖論, 第1章·第2章·第3章 參照.

註 4) K. Th. Eheberg; Finanzwissenschaft, 12, Aufl. S. 4. (1922).
W. Gerloff; Grundlegung der Finanzwissenschaft: Handbuch der Finanzwissenschaft, I. S. 6. (1925). (崔虎鎭; quo ibid., p. 11. 參照)

註 5) Jeremy Bentham은 그의 主著인 「政府斷片論」(A Fragment on Government)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의 功利主義公理를 說破했다一. Correspondent to discovery and improvement in the natural world, is reformation in the moral; if that which seems a common nation be, indeed, a true one, that in the moral world there no longer remains any matter for discovery. Perhaps, however, this may not be the case: perhaps among such observations as would be best calculated to serve as grounds for reformation, are some which, being observations of matters of fact hitherto either incompletely noticed, or not at all would, when produced, appear capable of bearing the name of discoveries: with so little method and precision have the consequences of this fundamental axiom, it i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 number that is the measure of right and wrong, been as yet developed. [Jeremy Bentham; A Fragment on Government, ed. by F.C. Montague, M.A (1891), p. 93].
또 J. S. Mill은 그의 「功利主義論」에서 이 公理를 認定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The creed which accepts as the foundation of morals, Utility, or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holds that actions are right in proportion as they tend to promote happiness, wrong as they tend to produce the reverse of happiness." [J.S. Mill; Utilitarianism, Chap. Ⅱ. §2]

聽에 屬하는 것으로서 兩說은 다같이 個人主義的 國家觀을 基礎로하여 租稅로 하여금 個人의 經濟的 活動에 대한 國家保護의 報酬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租稅는 이미 强制社會體를 歷史的으로 또는 有機的으로 發展하여 온 것으로 觀察하여 보면 人類가 共同生活을 위하여 徵收되는 租稅는 報酬의 槪念에서 변하여 義務의 觀念으로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義務의 觀念으로서의 租稅負擔의 分配는 普遍的이고 平等의 原則에 따라서 擔稅力을 標準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즉 歷史的 有機體說, 義務說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租稅能力說의 基本原理인 것으로서 歷史的 有機的 國家觀을 基礎로하는 特質性을 包容하고 있다. 이미 有機的 國家의 成立을 主張하는 以上, 個人이 國家로 부터 直接 利益을 享得하든가 않든가를 不問하고 租稅의 納付를 必要로 한다. 즉 租稅는 國民이 認定하는 一方的 犧牲인 것이다. 따라서 納稅力의 槪念은 本來의 生產觀念뿐만 아니라 消費의 諸 條件도 包攝한다. 즉 能力은 生產力 또는 生產物量에 存在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써 一切의 欲望을 充足하는 力量도 意味한다. 말하자면 能力은 主觀的 要素에 의해서 制限된다. 따라서 負擔, 犧牲의 觀念이 導入되어 壓迫과 犧牲의 均等이 租稅原理에 있어서 基本的 考察이 된다. 그러므로 納稅力은 그 喪失이 各人에 대하여 同等한 犧牲을 가져오게 하는 收益의 比率에 의하여 測定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犧牲의 槪念에서 更生된 能力說은 새로운 科學的展開의 出發點으로 되었다. 近代의 學者들은 平等犧牲의 빛을 通해야만 事實上의 能力槪念을 把握할 수 있다는 所以를 主張하고 이 二個의 觀念을 結合시켜 보려고 試圖하였던 것이다.

租稅犧牲說中 上述한 바와 같이 單純히 犧牲의 平等을 課稅의 原理로 하는 것은 John Stuart Mill에 의해서 불려지는 平等犧牲說이다. J. S. Mill에 의하면 課稅의 平等은 犧牲의 平等을 意味한다. 註6) 그리하여 이 單純한 平等犧牲說은 限界效用說의 擡頭와 功利主義哲學의 再興에 의해서 所謂 科學的인 Begründung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犧牲은 心理的 事象이기 때문에 그 科學的 解明은 效用理論의 硏究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Emil Sax (1845—1927), Friedrich von Wieser(1851—1926), Robert Meyer와 같은 사람들은 個人의 主觀的 犧牲의 平等을 限界效用의 程度가 어떠한가에 求하였다. 特히 Emil Sax는 課稅의 問題를 一切의 倫理的 考察에서 遊離시키고 課稅의 標準을 오로지 純經濟的 基礎위에서 說明하고 있다. 말하자면 E. Sax에 있어서는 犧牲의 平等이 아니라 徵收되는 價値의 平等이 課稅의 經濟的 基礎로 되고 있다. 즉 課稅原理로서의 倫理觀念은 全的으로 拒否되고 租稅現象은 오

註 6)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dited by W. J. Ashley, p. 804 以下 參照.

로지 價値現象으로서 論究되고 있는 것이다. 註7)

이러한 價値理論의 發展과 相應하여 平等犧牲說은 功利主義哲學과 結合하여 最小犧牲說로 展開되었다. 最小犧牲說의 代表者라고 할 수 있는 者에 Thomas Nixon Carver(1865—), Francis Ysidro Edgeworth (1845—1926)가 있다.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倫理學上의 功利學說을 가지고 課稅의 最高原理로 보고 있다. 課稅에 의해서 얻는 總純效用이 極大이어야 할 條件은 결국 總非效用이 極小라야 할 條件에 歸着한다. 註8) 즉 各人에 있어서의 最小犧牲은 客觀的 見地에 있어서 Benthamism과 一致한다고 하는 것이다.

課稅의 原理로서 말하자면 功利主義哲學과 같은 倫理上의 原則을 導入하여 온다는 것이 租稅分配의 科學的 Begründung으로서 果然 是認될 수 있는 것인가. 이와같은 問題는 課稅에 關한 限 財政學이 規範科學이냐, 實證科學이냐에 따를것이다. 이와 同時에 Thomas N. Carver나 Francis, Y. Edgeworth에 있어서의 功利學說이 어떤 意義로 租稅의 標準과 連繫되고 있는가에 依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解決은 功利主義와 課稅槪念의 分析에 의해서 明瞭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二. 功利主義의 時代的背景과 一般原理

1. 時代的 背景

英國에 있어서 功利主義가 勃興하여 그 發展的消滅을 보기까지의 期間은 大體로 1750年頃으로부터 1850年頃에 이르는 約一世紀間에 亘하는 것이다. 이 期間은 英國이 商業資本主義의 段階로부터 產業資本主義段階로 漸次 移行하면서 產業革命을 遂行하는 重大한 時期이다.

英國에 있어서 16世紀를 商權擴張의 時代라 한다면 17世紀는 植民事業이 興盛했던 時代라 할 것이다. Elizabeth女王 以後의 平和時代에는 人口增加와 그에 附隨한 失業者가 많이 생겨났고 都市에는 工業的 過渡期로서 人口過剩狀態를 나타내게 되어 그에 따라 新天地에의 活路開拓을 企圖하는 사람들이 續出하였다. 註1)

註 7) Emill Sax에 의하면 모든 人間의 欲望은 이것이 個別的 欲望과 集合的欲望의 2種으로 된다. 各人은 個別的 欲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他人과의 政治的 關係로부터 생기는 集合的 欲望도 갖는다는 것이다. 財政學의 研究對象은 이 集合的 欲望인 것으로 오로지 國家만이 이러한 欲望을 充足할 수 있다. 그리하여 各人은 國家가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게끔 國家를 支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課稅의 基礎다. 課稅의 標準은 그에 의하면 各人으로부터 徵收되는 財貨의 限界效用에 依據하여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課稅의 負擔은 徵收되는 財貨의 限界效用이 同等하게 될 때 平等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等價의 經濟的 原理라고 하였다(Emil Sax; Grundlegung der theoretischen Staatswirtschaft, S. 525.參照).

註 8) Francis. Y. Edgeworth; Papers relating to political economy, Vol. Ⅱ, p. 103. 參照.

註 1) W. Ash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裵福石譯 p. 117~120 參照.

거기에 宗敎上의 原因도 觸媒劑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新大陸에 移住한 者들 中 北美洲東쪽 海岸의 北部에 移住한 者들은 단지 本國에 있어서의 小農的 經營의 再版에 不過하였지만 南部의 移民者들은 廣大한 耕作面積에 많은 資本을 投資하고 農業勞動者들을 많이 雇傭하여 일로 大農制的經營을 함으로써 主로 歐洲市場을 相對로 生產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當初부터 營利를 위한 經營이었고 지극히 合理的인 것이었다. 註2) 이러한 美洲植民地의 뚜렷한 發展은 마침내 英本國에 刺戟을 주어 1651年과 1660年의 「航海條例」(Navigation Act)가 發布되게 되었다- 註3) 이 法令은 곧 英本國에 有利한 地位를 가져왔고 連鎖的 反應을 일으켜 國內의 工業一般의 發展에 까지 刺戟을 주게 되었다.

從來에는 匠人(Journeyman)이 直接 消費者를 相對로 供給이 이루어 졌으나 멀리 海外에 그 販路를 닦기 위하여서는 遠隔地의 消費者와 匠人과의 結附를 맺게 하는 仲介者를 必要하게 하였고 이러한 것은 곧 國內에서도 適用되어 交通去來가 發達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되어 匠人들은 마침내 上下로부터 二重으로 商人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交通의 發達로 一個의 都市 및 그 周圍의 田園이 自給自足의 經濟單位로서는 無意味하게 되었음은 勿論 各都市의 製品間에 競爭이 發生하여 經濟的條件이 나쁜 產業은 消滅되어 버리고 모든 點으로 보아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는 產業만이 더욱 繁盛하게 되었다. 이때에 있어서 中間商人으로 가장 有力했던 것은 Merchant Adventurers(冒險商人)였으며 그들은 莫大한 資本을 蓄積하므로써 仲介商의 役割을 遂行하였다. 그런데 遠隔地로부터 原料의 大量的인 供給은 完全히 大資本의 所有者였던 이런 仲介商의 手中으로 떨어져 버리고 匠人의 地位는 다만 加工的인 것에 그치게됨으로써 비로서 여기에 Verlag System 또는 Domestic System(家內工業制度)가 形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註4)

當時 英國의 모든 織物工業은 가장 重要한 工業이었으며 이는 모두 代理商制度로 行하여 졌는데 그 中에 가장 뚜렷한 모습으로 發展한 것은 毛織工業이었다. 따라서 近代初期를 工業的으로 본다면 「代理商工業時代」 또는 「家內工業時代」라고 指稱할 수가 있다. 이것은 主로 資本家의 統制下에 市場生產的으로 利潤을 目的

註 2) 本位田祥男; 英國經濟史, p. 59,

註 3) 1651年과 1660年의 「船海條例」는 모두 統制的, 保護的인 것이었으며 그 法律들은 植民地制度—그 經濟的 要綱에 의하면 歐洲列强의 帝國主義制度에 類似하다—의 基礎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同條例는 英國을 植民地生產物의 中心市場이 되게할 뿐 아니라 植民地에 向한 製造品供給의 中心地가 되게 했다.

註 4) 本位田祥男; ibid. p. 62.
Court;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pp.35~42.
崔虎鎭; 一般經濟史, 1946, pp.259~260 參照.

으로 하여 生産되는 最初의 生産關係였던 것이다. 그 技術 및 分業程度는 大差가 없었으나 그 生産原理의 目的에 있어서는 모두 中世와 相異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있어서 製品의 品質 賃金 및 勞動者等에 관한 統制는 모두 國家의 手中에 吸收되었고 所謂 Mercantilism에 依한 積極的 國家保護政策은 漸次 擴大되게 되었던 것이다.

保護政策의 가장 두렷한 것으로는 特許制度가 있었다. 이 制度는 技術者와 國家와의 提携를 招來했고 獨占資本의 育成과 大經營으로의 株式會社制度의 成立을 가져왔다. 또한 商業의 興盛은 交換의 媒介物인 貨幣에 對한 尊重心과 欲望을 高熱化시켰으며 그로 말미암아 金銀採掘熱을 高調시켰다. 英國은 16·7世紀에 있어서 莫大한 貨幣流入이 있었고 이 貨幣流入은 다시 企業熱을 이루어 그것이 企業資本으로서 役割하기 위하여서는 貨幣의 需要가 有無相通하여 個人이 所有한 것이 資本으로서 吸收되는 金融組織이 必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1649年에 「Bank of England」가 設立되었고 이어서 여러 銀行이 設立되게 되었던 것이다. 註5)

第17世紀는 農村에 있어서 볼 때에는 封建的 隷屬에서 벗어나 自由로운 狀態에 있었다. 그 中堅이 곧 「Yeoman」(自營農)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狀態는 農業을 合理化하려는 努力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688年의 名譽革命이 있은 以後 國權은 大地主階級이 掌握하게 되었고 이를 機會로하여 政府는 언제나 大地主 或은 資本家的 小作人의 利益을 保護하였다. 이러한 保護政策에 따라 農民들의 眼目은 漸次 耕作農業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따라서 政府는 스스로 綜劃運動(Enclousre Movement)의 促進에 나서게 되었다. 이 綜劃은 耕作能率의 向上에 主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合理的 農業經營으로서의 綜劃運動은 大體로 1870年代에 完成되었고 그 結果 生産力을 增加시켰으며 從來의 耕作地도 個人的으로 各各 獨特한 技術을 利用하여 集約的 經營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註6) 이렇게 綜劃된 土地는 大小 數個單位로 分割되어 大體로 그에 따르는 規模의 農業이 經營되었다. 當時 新興資本家는 Lancashire, Yorkshire 및 中部諸州에서 新興工業을 經營하고 있었으나 그에 反하여 舊來의 貴族은 大規模의 農場을 合理的으로 經營하고 있었다. 이러한 大規模의 合理的 經營은 高價한 農機械의 發明과 더부러 發展하였고 그것은 곧 大農과 小農의 對立에서 小農의 漸次的인 沒落을 招來하게 하는 原因이 되었다. 거기에 또한 人口增加와 生産力關係에서 오는 穀價의 騰落과 그 影響은 大端히 커서 大農은 利益을 보았으나 自家勞動程度에 依存하고 있는 小農

註 5) 本位田祥男; ibid., pp. 66~67 參照.
註 6) W. Ash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裏輔石譯, pp.123~125. W. H. B. Court;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pp. 26~35參照.

은 그 利益에 參與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企業關係는 土地에 대한 權利關係에도 影響을 미쳤다. 貧弱하고 微力한 耕作權을 가지고 있던 農夫는 地代引上에 應하고 兼하여 그것을 大農場主에게 讓渡치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穀價가 下落하였을 때는 一時 借金을 한 者가 많았으나 好景氣가 되어도 나날이 늘어가는 利子支拂이 겹치게 되었다. 註7) 또한 여기에 特記하여야 할 것은 資本家들의 土地兼占이다. 이 土地買入에 의한 兼占은 從來의 自營農階級의 土地喪失과 沒落을 가져왔고 그리하여 이들 農業人口의 都市集中을 招來하였으며 이것은 勞動人口의 激增과, 한편 그것은 勞動賃金低下에까지 反映하고 따라서 重大한 社會問題를 發生하게 되었다.

이렇게 英國經濟界에 流入한 資本, 特히 小數市民의 손에 集中된 資本은 언제나 그것을 投下할만한 企業을 期待하고 있었다. 이에 資本主義精神은 生產業에 돌리어져 드디어 工業을 根本的으로 變革시켰던 것이다. 이 變革 즉 家內的 分散工業으로 부터 集約的 工場工業으로의 發展을 可能케 한 것은 技術의 發展이었다. 一般的으로 볼 때 技術은 文藝復興(Renaissance) 以來 合理的으로 思惟하는 傾向에 의하여 促進되었으며 財貨의 需要가 激增함으로써 더욱 뚜렷하여져서 드디어 全經濟界를 革新하는 動因으로 되었다. 이 革新은 곧 工場制下의 大規模生產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所謂 產業革命이었다.

以上에서 商業資本主義段階에서 產業資本主義로 넘어오기 까지의 過渡期的段階를 살펴 버았다. 그러면 이와같은 變革으로 어떠한 것이 發生하는가에 대하여 Arnold Toynbee(1852—83)敎授는 말하기를 「自由競爭의 發生」이라고 說明하고 있으며 註8) W. J. Ashley敎授는 「工場制度의 成立」에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註9)如何間 新機械의 發明에 따라서 產業革命이 促進된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었다. 產業革命은 大體로 1770年以後로 부터 1830年에 亘하여 일어 났으나 그 以後로는 工業과 貿易이 大規模化하고 製鐵에 代身하여 製鋼이 發明發達하고 鐵道가 交通機關의 變革을 가져 왔으며 電力을 利用하는 電信, 電話等의 通信機關이 發達하게 되면서 바야흐로 產業革命은 高度化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變革은 비단 工業面에 뿐만 아니라 特別히 機械의 應用에 不適하거나 需要가 限定되어 있는 것을 除外하고서는 모두 工場化하여 갔다. 集約的인 勞動을 하는 多數의 勞動者들은 單純히 서로 集合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整然한 分業이 있었던 것이다.註10) 이 分業下에 規則的으로 勞動을하면 自然히 그 能率은 增加한다. 또 그것이 大量生產으로 되

註 7) 本位田祥男; ibid., p. 77.
註 8) A. Toynbee;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p. 64.
註 9) W. Ash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裵福石譯, p. 160.
註10) 本位田祥男; ibid., p. 86參照.

면 될 수록 그 生產費는 低下하였다. 단지 大資本에 의하여 原料購買를 有利하게 하는 程度가 아니라 모든 設備의 能率을 보다 많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一機械가 數百名의 勞動者를 代身하게 되면 그만큼 廉價한 生產을 할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使用되는 勞動者의 能率을 올리게 했으므로 더욱 더 그 生產費는 적게 되었다. 이와 같이 生產費가 두렷하게 低下되자 舊來의 家內工業은 消滅되고 말았다. 註11)

이와 같이 늘어가는 國富를 獲得한 것은 資本家였다. 그들은 一定한 技術을 中心으로 하여 工場을 設立하고 많은 勞動者를 雇傭하여 그것을 契機로 市場生產을 하였던 것이다. 그 事業에 있어서는 最高唯一의 統制權을 쥐고 많은 勞動者를 自由로 驅使함과 同時에 經濟上으로의 損益을 完全히 스스로 負擔하였으며 또한 一面으로 그들은 貨幣價値의 獲得을 위하여 企業을 營爲하였다. 그 生產과 消費와의 거리는 멀어졌으므로 消費者에 대한 人的 關係는 엷어 졌다. 資本家들은 스스로 勞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勞動者를 統制하는데 不過하며 또 얻어지는 營利가 一面으로는 機械의 良否에 따르는 것이므로 製作에 대한 興味도 喪失되었다. 그리하여 機械生產의 結果 資本의 偉力은 激增하였으므로 貨幣에 대한 欲求는 더욱 더 强하여져서 사람들은 오직 貨幣價値를 위해서만 企業을하게끔 되어 버렸다. 所謂 經濟의 「合理化」(Rationalization)가 그것이었다. 企業家가 그 事業에 있어서 成功하기 위하여서는 될 수 있는 대로 廉價한 生產을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高價로 팔아 그 差額을 높이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戰爭 其他에 의해서 供給이 조금이라도 달린다고 생각하면 바로 物價는 騰貴한다. 이러한 方法이 甚하여지면 그만큼 反動이 强하여진다. 그리하여 物價의 騰落은 非常하게 銳敏해지고 따라서 經濟界의 變動은 매우 顯著해져 갔다. 當時에 있어서 企業家들이 廉價한 生產을 하기 위하여 가장 重要하게 여겼던 것은 低廉한 價格으로 勞動者를 雇傭하리는 일이었다. 이러한 方法은 가장 악착스럽고 모든 手段을 다하여 行하여 졌던 것이다. 그 日給을 깎아 내리는 것은 勿論 될 수 있는 대로 勞動時間을 늘리려고 했다. 그리하여 끝에가서는 새 勞動者를 雇傭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곧 當時의 資本主義 精神, 즉 經濟的 合理主義의 表現이었던 것이다. 註12)

以上에서 보아온 產業革命은 生產體制의 變革과 合理主義의 表現이었으며 그理論的 表現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自由放任主義」(laissez faire)였다. 功利主義도 또한 이러한 範疇內에서 나타난 것이며 거기에 位置가 規制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註 11) 이 關係는 國際間에도 發生하여 英國의 機械綿絲는 大陸의 家內工業을 누르고 이제제의 그 販路를 擴大했던 것이다.

註 12) 本位田祥男; ibid., p. 88參照.

다음으로 以上과 같은 經濟的 狀況에서 發生하게 된 社會的 問題를 보면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人口問題요 둘째로는 貧富의 差에 對한 問題다. 現存하는 資料에 依據하여 人口增加의 狀態를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18世紀中葉에 있어서 人口 1,000名當 年出生率은 그 以前에 比較해서 確實히 高率이었다. 1710年頃 以後 同世紀의 前半期를 통하여 上昇하였고 그 後 數十年은 쭉 緩慢한 上昇을 繼續하였고 1790年後에 이르러서는 그 下降이 緩慢한 것이 明白하다.註13) 이것으로 본다면 産業組織에 關聯된 여러가지 變化 및 早婚을 抑制하는 機能을 했던 많은 産業上의 見習匠人制度의 弱化 乃至는 衰頹等을 밑받침으로 하는 社會習俗, 準則 其他 社會制度等의 變化가 그와 같은 人口增加의 影響을 주고 있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또 1800年 以後의 Ireland人의 移住도 人口增加의 한 要因을 이루었다.

다음에 死亡率을 보면 人口의 趨勢가 分明치는 않으나 London에서는 1750年 以後에 그리고 Manchester에서는 좀 더 늦게 明確하게 低下하는 傾向이 있었다. 一國 全體로써 보면 人口의 1,000名當 死亡率은 同世紀의 第1.4半期以後에 低下하기 시작하여 1780年 以後는 都市生活의 急激한 發達에도 不拘하고 顯著하게 低下하였다. 1815年의 對佛戰爭의 終結과 1831—1832年의 「코레라」의 流行이 있을 동안에 死亡率은 急激히 上昇했으나 그렇다고 옛 水準만큼은 決코 높아지지 아니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때 英國에 있어서 18世紀 後半以後의 人口動態는 確實히 當時의 社會的 諸條件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當前 어떤 地方에서나 生活水準이 거의 全部分에 걸쳐서 극히 낮은 住民에게 있어서는 生活限界가 좀 向上해도 重大한 것이었고 이 生活資源增加分은 그것에 比例하는 以上의 人口增加를 招來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러한 人口增加의 結果는 많은 사람들을 極甚한 窮乏속으로 몰아 넣게 되었던 것이다. 또 때로는 凶作과 景氣變動, 其他의 諸原因에 의하여 生活水準의 低下가 擴大되어 갔던 것이다. Napoleon戰爭後의 時代 特히 1820年代의 窮乏期에 死亡率의 上昇을 보았고 마침내 全體의 死亡率이 上昇될 때까지 不景氣는 進行하여 갔다. 註14) 18世紀末 즉 英國이 統一(1707)되기 直前에 Scotland는 「飢饉의 數年」을 經過하고 있었으나 여섯차례에 걸친 凶年에 의하여 食物은 缺乏하고 數個處에서는 住民의 半數 乃至 3分之1을 잃었다. Ireland는 英國人口가 急速히 增大하여 가고 있던 1780年 以後의 數年間에 두려운 飢饉의 慘禍와 그 餘波(1845—50)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 人口의 1/4을 喪失했다.

要컨대 當時의 社會的 變動과 時代的 條件은 人口問題를 惹起시켰던 것이며 所

註 13) W. H. B. Court; op.cit. p. 10 參照.
註 14) ibid., p. 14.

謂 支配者들이 挑發한 繼續的 貪欲戰爭의 遂行과 産業資本의 擡頭에 隨伴된 景氣變動 및 資本集積에 基因되는 모든 貧困과 資源의 社會的 缺乏은 人口와의 關係에서 提起되는 深刻한 問題를 發生시지키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點에서 이 人口問題를 理論的으로 分析한 것이 곧 Thomas Robert Malthus(1766—1834)의 「人口論」이었다. 또 이러한 것은 A. Smith 以來 J. Bentham, J. S. Mill 等의 市民社會思想의 合理主義的主張도 登場시키게 되는 것이다.

들째로는 貧富의 差에 對한 問題인데 이 問題는 資本主義發展에 따르는, 즉 富의 蓄積 다시 말하자면 資本의 集中化에 隨伴하는 問題인 것이었다. 1830年代의 英國勞動者는 非衛生的인 집에서 살며 單調로운 工場勞動에 從事하고 婦人 및 子女의 就業때문에 그나마도 단란한 家庭生活의 機會를 잃었고 不景氣時에는 失業하여 거우 救貧法의 助力을 입는 程度였으며 流行病에는 何等의 對抗策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精神生活面을 보면 急激히 發生한 都會에는 敎會 및 學校의 設備가 不足하였고 娛樂으로서는 오직 飮酒와 賭博이 있었을 뿐, 男女間의 風紀도 甚히 頹廢하였던 것이 一能的 狀態였다. 이때 政府의 政策으로서는 1815年의 「穀物法」의 制定과 1834年의 「救貧法」의 改正이 있었으나 地主黨도 實業黨도 社會政策에 관해서는 아무런 施設도 할 줄 몰랐던 것이며 그의 工場法 制定 및 穀物法撤廢의 運動과 같은 것은 1830年代에 들어와 비로소 着手된데 不過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1820年代에는 人口가 急增하였고 또 1760年에 輸出入合計 2,500萬 Pound에 不過했던 것이 1820年에 와서는 7,300萬 Pound로 外國貿易이 飛躍하고 있었다. 즉 이 60年間에는 人口가 거의 2倍로 늘고 商業이 3倍로 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國富增殖이 빨라졌던 것은 勿論이며 地方大工業地帶에 大小無數의 都會가 發達하였다. 이에 隨伴하여 London 其他의 商業地와 또 金融 및 貿易의 大發達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有力한 銀行家, 商人, 工業家가 輩出하여 內外市場에서 活躍하게 되었다. 이러한 貧富의 差異는 John S. Mill로 하여금 그의 1841年의 著書 「經濟原論」(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지금까지 이룩된 諸 發明이 人間의 勞苦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느냐 아니 했느냐하는 것은 疑問이다. 國民의 大多數는 如前히 不潔한 감옥살이와도 같은 삶을 보내고 있었다.』고 慨嘆하게 했다. 註15) 또 T. Carlyle(1795—1881)도 『英國은 富에 充滿하여 있는데도 榮養不足으로 죽을 지경에 있다』고 調刺調로 表現하고 있다. 註16) 結局 英國에 있어서 産業革命은 富의 生産을 豊富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 分配를 甚히 不均等하게 하였던 것으로 한쪽에는 赤手巨萬의 財産을 蓄積하는 바 되었으나 다른 한

註 15)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Ch. VI. §2.
註 16) Thomas Carlyle; Past and Present, Ch.I.

쪽에는 無數한 貧民이 出現하여 新興大工業都市에 가득차고 不健康 無敎育, 放蕩無節制하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을 또한 後에 英國首相까지 되었던 B. Disraeli (1804—81) 조차도 그의 「Sybil or the Two Nations」이라는 小說에서 「오늘의 英國은 서로 서로 諒解를 할 수 없는 바 마치 熱帶人과 寒帶人처럼 二個의 國民, 즉 富裕한 英國과 貧困한 英國으로 分裂하였다」고 描寫하였다. 註17)

以上에서 본 社會 및 經濟的 條件下에서 發生한 重要한 政治問題는 곧 1832年의 選擧法改正(Reform Bill)과 "Anti-Corn Law Movement"(反穀物法運動) 그리고 Chartist Movement가 있다. 選擧法改正運動은 新興產業資本家階級이 實力의 强大化와 더부러 政治參與에의 門戶를 열기 위한 目的으로 舊土地貴族階級을 相對로 鬪爭하는 運動이 었으며 Anti-Corn Law Movement도 역시 土地 및 穀物을 中心으로한 保護政策을 打破하고 自由貿易과 放任政策을 施行함으로써 보다 높은 權益을 얻으려는 新興市民階級의 時代的 要求에서 나온 運動이었다. 그러나 끝으로 Chartist Movement는 下層運動者들을 前衛로한 急進的 中產階級의 政治的, 經濟的인 利益參與를 目的으로 한 大衆運動이었다. 註18)

以上에서 叙述한 功利主義의 時代的 背景으로서의 經濟, 社會및 政治的인 背景은 結局 한마디로 歸結하여 말한다면 合理主義的 資本主義精神의 發顯으로 나타난, 모든 國家的保護 乃至는 抑壓統制로부터의 自由로운 發展과 富의 蓄積을 위한 自由放任主義的 表現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功利主義도 또한 이 範疇에서 脫皮하여 생각될 수 없음은 勿論이다.

2. 一般原理

功利主義의 一般的 前提가 되어 있는 것은 『人間은 快樂을 求하고 苦痛을 避한다』는 快樂說이며 그에서 부터 導出된 그들의 命題는 곧 『最大多數의 最大幸福(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이었다. 이와 같은 前提에서 모든 事物이나 行爲의 價値判斷을 適用하는 所謂 『効用(功利)의 原理』(the Principle of Utility)가 主張되는 것이다. 따라서 功利主義는 經濟學說일 뿐만이 아니라 倫理, 心理, 社會, 政治 및 法律學說의 廣範한 部面에 걸치는 것이다.

Bentham은 그의 「道德 및 立法原理序說」(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 功利主義의 基本的 前提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自然은 人類를 苦痛(pain)과 快樂(pleasure)이라는 至高한 두 主人의 支配下에 두었다. 오직 그 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마땅히 하여야 하는가를 指示하여 준다…

註 17) David Thomson: England in the 19th Century, p. 39.

註 18) T. S. Schapiro; Modern and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942. David Thomson; ibid.,
本田喜代治; 社會思想史를 各各 參照.

….人間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것들의 臣下로 從屬되어 있다.』註19) 이것으로 그는 人間의 基本的 性向으로서 모든 사람은 苦痛을 避하고 快樂을 求한다는 것을 認定한다. 또 이러한 Bentham의 功利主義基本前提의 設定은 그의 理論의 宣傳者였던 James Mill에게서도 發見된다. 그는 그의 著「政府論」(Essay on the Government)에서 經驗이 人間性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은 個人이 그 行動과 目的이 있어서 끊임 없이 快樂欲에 의하여 促進되고 苦痛은 될 수 있는 대로 避하여 快樂을 最大限으로 獲得하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註20) 그의 아들이며 또 功利主義의 最終的 保壘였다고 볼 수 있는 J. S. Mill도 勿論 功利主義的 立場에서는 이 假說을 認定하며 따라서 그는 그의「功利主義論」(Utilitarianism)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幸福이란 快樂과, 그리고 苦痛의 解免을 意味한다. 不幸이란 苦痛과 그리고 快樂의 缺乏을 意味한다.』그리고 그는 계속하여『功利主義의 基礎理論인 人生論 즉 快樂과 그리고 苦痛으로 부터의 解放이 窮極目的으로서 우리의 欲求는 可能한 唯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註21) 그러나 J. S. Mill은 J. Bentham이 快樂의 量을 重要視한데 比하여 快樂의 質도 重要視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量만을 重要視한다는 것은「不合理한 것」이라고 論하고 있다.註22)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結局 功利主義의 一般的인 基本前提는『모든 人間은 快樂을 求하고 苦痛을 避한다』고 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前提에서 道德的인 或은 事物의 價値의 判斷은「效用의 原理」에 의하는 것이다. 이「效用의 原理」는 功利主義를 定義하는 가장 첨경의 要素인 故로 매우 重大한 것이다. J. Bentham도 역시 그의「道德 및 立法原理序說」에서「效用의 原理」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效用의 原理란 어떠한 行爲라도 現在 問題가 되어있는 利害關係의 當事者의 幸福을 增進하는 傾向을 가지고 있느냐 즉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表現한다면 그 幸福을 增進하느냐 或은 妨害하느냐에 의하여 一切의 行動을 肯定 또는 否定하는 原理』註23)라는 것이다. 또 계속해서 그는 事物에 대한「效用」을『利害關係者에게 있어서 利益, 利得, 快樂, 善—한마디로 幸福—을 낳는 傾向과 禍害, 苦痛, 邪惡—즉 結局에 있어서 不幸이 생기는 것—을 阻止시키는 傾向을 가진 一切의 事物의 性質』이라고 說明하고 있다.註24) 이러한 Bentham의 效用原理는 모든 功利主義學說의 Bible이 되고 있는 것

註 19) Jeremy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823. —Frowde Ed.,(1879), p. 1.
註 20) J. Mill; Essays on Government-quo.W.Davidson, p. 91.
註 21) John S. Mill; Utilitarianism, Chap.II., Pha. 2.
註 22) J. S. Mill; ibid., Chap.II.,Pha. 4 參照.
註 23) J. Bentham; ibid., pp1~2.
註 24) J. Bentham; ibid.,

이다.

위에서 叙述한 Bentham의 効用論은 그렇지만 事實上 이미 David Hume에 의하여 만드러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Hume의 解釋者들이 보는 바로서는 그가 認定한 所謂 快樂은 人間行爲의 目的이라는 見解에는 一般的 問題로서 一致하고 있다. Hume은 그것을 이렇게 說明한다. 『어떤 사람에게 왜 運動을 하느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그는 健康을 維持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對答할 것이다. 그때 그러면 왜 健康을 欲求하느냐고 追窮한다면 그 사람은 病이 나면 苦痛스럽기 때문이라고 선뜻 應答할 것이다. 거기서 더 追窮하고 나아가서 그러면 왜 苦痛을 싫어 하느냐 하는 理由를 듣고저 한다면 그사람은 아무런 말도 應答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窮極의 目的이며 그 以上의 다른 目的으로 說明될 수 없는 것이다.』註25) 그러나 Hume이 說明한 以上의 効用論이나 Bentham 等의 効用論中에는 不得已 다음과 같은 問題가 提起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個人的 快苦와 他一般의 快苦와의 一致 즉 個體的 人間과 社會的 關係로서의 人間과의 사이에 發生하는 問題이다. 萬一 나의 快樂이 나의 欲求의 自然的 對象이요 나의 苦痛은 나의 嫌惡의 自然的 對象이라면 어째서 一般的 効用을 追求할 뿐 내 私益을 追求치 않게끔 나를 고무하는 道德的 感情이 내 性品의 構成的 要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같은 必然的인 矛盾을 擁護하고 合理化시키기 위한 것이 結局 所謂「自然調和」또는「利害關係自然一致說」인 것이다. Hume에 依하면 人間心理의 自然發生的인『同情의 感情』(the Feeling of Sympathy)에서 그것을 求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理論은 後에 그의 弟子인 Adam Smith에 미쳐 그의 有名한「invisible hand」(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社會的 自然調和를 主張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點에 대하여 Bentham만은「人爲的 調和」를 主張하는 傾向이 있다. 즉 그는 社會的 立法의 制裁에 의한 調和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本質的 面을 解剖하여 볼 때에는 오히려 그와 反對의 面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Hume은 利己主義的體系를 論理的 平易化의 要求에 대한 과정에서 나오는 一種의 副産物이라고 看做하였다. 그는 利己的 感情과 社會的 感情間에 矛盾이 이루어지는 可能性을 否認하였다. 이 諸感情은 利己心과 野望, 利己心과 復讐心, 利己心과 虛榮心과 같은 程度의 相反에 不過하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아마 一旦 効用의 原理를 許容하고 同情의 原理가 그 必然的 結果로서 따라오는 것인듯 하다. 따라서 Hume과 功利主義와의 連結에서 생각하여 볼 때 그 온갖 努力에도 不拘하고 功利主義는 利害關係의 同情的 融合의 原理를 決코 完全하게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Bentham은「利己主義」가 排他的인 것을 意味하지 않는 限 오히려 人間의 우세한 性向이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利己主義感情은 어떤 客觀的 等價를 容認하는

註 25) David Hume; Inpuiry into the Human Understanding, Appendix I.

어느 다른 것들 보다 더 잘 수식된다고 보았다. 苦痛에 대한 恐怖는 어떤 正確성을 가지고 評價될 수 있으며 當該 苦痛이 眞實로 利己的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恐怖와 比較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効用原理를 適用하는 가장 有名한 것으로서 「利己的獨斷論」인 經濟學이 存在하는 理由라고 Bentham은 說明한다.註26) 여기에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個人主義的 利己心을 오히려 尊敬하면서도 그 矛盾을 덜어버리려고 한다는데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對照的으로 또 露骨的으로 利己心의 優勢를 主張하면서 그 「自然融合」을 대담하게 내세운 Bernard de Mandeville (1670—1733)의 所謂 「私惡 即 公益」(Private Vices, Public benifites)이라는 公理는 그 時代的 立場을 鮮明하게 表現하여 주는 것이므로 Bentham의 公理인 「最大多數의 最大幸福」과 連繫하여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무엇이 있다고 볼 것이다.

Bentham은 「各 個個人의 모든 行爲뿐만 아니라 政府의 모든 方策」에도 効用의 原理가 適用된다고 主張한다.註27) 그렇다면 政府는 個人의 行爲에 對比할 때 社會의 行爲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社會의 利益이란 都大體 무엇인가. 『그것을 構成하는 成員의 諸 利益의 總計다.』 그러므로 『個人의 利益이 무엇이냐를 理解하지 않고 社會의 利益을 말하는 것은 無益하다.』 「政府의 어느 施策도」 어느 一個의 「全體者」의 行爲가 아니라 『어느 特定한 1人 或은 사람들에 의하여 遂行되는 어느 特定한 種類의 行爲에 不過하다』.註28) 그러므로 어떤 行爲에 「社會의 利益」을 增進한다고 말해질 때 그것은 結局 그 가운데의 「될 수 있는대로 많은 數의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幸福」(The greatest possible happiness of the greatest possible number)을 增進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効用의 原理」는 結局 「最大多數의 最大幸福原理」가 되는 것이다. 社會를 全體로써 把握치 않고 어디까지나 「個個人」에 還元한다는 것에서 그의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은 徹底한 個人主義的 性格을 갖는 것이다. 그는 『各人은 한 사람으로 헤아려야 하며 한사람 以上의 것으로 헤아려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個人主義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의 立場에서는 「効用」의 量的 計算을 必要로하였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快樂을 모두 몰아서 結局 數字에 還元하는 所謂 「幸福計算」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點에서 그는 個人의 平等에 連繫되는 것이다.註29)

註 26) Elie Halévy; The Growth of Philosophic Radicalism(Trans. by Mary Morris), 1955, pp 14~15. 參照.

註 27) J.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s. 1823, pp1~2, 參照.

註 28) J. Bentham; ibid., Chap. I. §5. 7.

註 29) A. V. Dicey; Lectures on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Public Opinion in England during the 19th C. (1920), Lectures, IV. P. 158, 參照.

Bentham은 財産의 平等을 强力히 主張하지는 않았으나 富와 幸福과의 關係를 論하여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의 確立에는 富의 平等이 必要하다고 結論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平等은 法앞에서 平等함을 意味하는 外에 富의 平等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註30) 그는 安全(그것은 私有財産의 安全에 대한 保障이다)과 平等이 서로 衝突하는 경우에는 『躊躇할 것 없이 平等을 버리라』고 斷言하고 있다.註31) 또 그는 自由에 대한 態度로서 『自由가 法의 主目的가운데 列擧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랄지 모르나 萬若 우리가 混亂을 避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安全」의 一部分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註32) 이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 「自由」가 「安全」가운데의 一部로서 보여지고 있는 點에 그의 自由의 要求의 特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治的 自由의 立場과는 달리 그가 가장 重要視한 것은 立法이 基準으로서의 幸福의 實質的 內容이 實로 「中産階級」의 幸福에 있었던 故로 그의 具體的인 立法目的은 그階級이 實現을 바랐던 「契約의 自由」를 基礎로 하는 經濟上의 自由였다. 따라서 그는 經濟上으로는 「自由放任」을 主張하였다. Bentham은 「經濟學大意」(Manual of Political Economy)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무 것도 政府에 의하여 하려고 企圖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一般原則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政府의 motto 或은 標語는 「조용하자」가 아니면 아니되는 것이다…… 農業, 工業 및 商業이 政府에 提出하는 要求는 「나에게 日光을 遮斷시키는 것은 물러가라」고 외쳤던 Alexander에 대한 要求와 똑같은 穩健하고 穩當한 것이다』.註33) 이와 같이 볼때 經濟分野에서 그는 確實히 Adam Smith의 弟子였고 그 自身도 이것을 認定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弟子들은 이 經濟的 自由의 實現을 위하여 모든 努力을 하였던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功利主義는 그 公理인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 그 根本前提인 快樂說을 밑바탕으로 한 所謂 效用의 原理로서 유도된 理論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觀念論的 合理의 理論이며 그 「效用」의 觀念을 價値觀念으로 하는 「最大多數」의 觀念에 의하여 成立되어 있던 「市民社會」의 觀念에 대한 感覺論的 表現에 不過한 것 이었다. Locke의 自然狀態에 있어서의 「個人」 즉 「獨立生産者」는 一世紀를 지나서 이제 여기에 産業資本家로서 登場하여 「效用」이라

註 30) J. Bentham;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Part I, Chap. II.
石上良平; 英國社會思想史研究(1958), 創文社, p. 25, 參照.
註 31) J. Bentham ibid.,
John Muccun; Six Radical Thinkers, (1910), p. 26 參照.
註 32) J. Bentham;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Part I. Chap. II, 參照.
註 33) J. Bentham; Manual of Political Economy, (1798). quo. form J.M.Keynes's Laissez-faire and Communism (1926), N. Y. p. 28.

는 觀念을 基礎로 하여 再構成한 原子論的 機械論의 「市民社會觀念」이라고 할 것이다. 註34)

三. 功利主義와 平等犧牲說

上述한바와 같은 功利主義哲學은 Thomas N. Carver나 Francis Y. Edgeworth의 租稅理論의 科學的 基礎가 되었으며 Jeremy Bentham 도 역시 功利論을 基礎로 하여 다음과 같은 租稅槪念을 表明하고 있다.

『租稅의 不納은 害惡한 行爲인가. 確實히 그렇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 社會를 內憂外患으로 부터 防護하기 위해서는 巨額의 費用을 必要로 하게 되며 이러한 費用支辨에 要하는 經費는 個人으로 부터 徵收되는 租稅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果然 그렇다면 이들의 課稅는 國家支配者가 國家全體의 福利를 위하여 받아야 할 一種의 利益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徵收되는 租稅가 그 目的에 使用되기 前에 이것을 受納使用해야 할 責任者가 存在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서 이들 責任있는 者가 租稅를 受納한 後 適當한 目的에 使用한다면 그것은 利益이 될 것이나 그 目的에 合當치 않으면 害惡이다. 그러나 이것을 受納하여도 그 適當한 곳에 使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秩序있는 社會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事實上 있을 수 없다. 秩序가 極히 混亂된 國家에 있어서 까지도 租稅의 最大部分은 그 目的에 따라서 使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使用目的이 確實하면 租稅不納은 有害한 行爲인 것이다. ……만약에 突然히 모든 租稅納付가 中止된다면 이미 正義의 維持나 外敵으로 부터의 社會의 防護도 確實히 無效로 될 것이다. 또한 國內에 있어서 弱者는 强者를 위하여 各種의 方法에 의하여 迫害되고 또한 國外의 壓迫者에 의하여 迫迫되는 것은 確實하다. 註1)

Bentham은 또한 生產에 必要한 費用에 課稅하는데에 對한 不正, 不當性을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貧困때문에 租稅를 支拂할 수 없는 者는 激甚한 害惡에 引導된다. 租稅의 不便益代身에 窮乏의 苦痛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人頭稅는 害惡이다. 人間은 頭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餘裕가 있다고는 할수 없다. ……生活에 必要한 費用에 課稅하는 結果는 肉體的困窮, 病苦, 死滅 그 自體에 까지 引導할 것이다』.註2) Bentham의 政治上에 있어서의 無爲論은 理論上 그로 하여금 租稅授受說로 이끌었다. 더구나 그는 前述한바와 같이 生活費에 대한

註 34) E. Hálevy; ibid.,
J. Bowring; Bentham's Works, Vol.II.p. 500.
松下圭一; 市民政治理論의 形成, p. 408 以上 參照.

註 1) J.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Works I, published by John Bowring, pp. 72—78.

註 2) J. Bentham; ibid., op. cit., Works I. chap. XV, p. 319.

免稅를 主張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Bentham을 가지고 最低生活費免稅의 主唱者라고 하는 것은 이때문인 것이다.

Bentham의 租稅理念과 課稅原理는 以上과 같이 斷片的인 所論에 不過하고 아직 學問的으로 그 體系가 形成되고 있지는 못하다. 功利主義哲學과 租稅論과의 學問的 結合은 上述한 Thomas N. Carver와 Francis Y. Edgeworth에 의할 수 밖에 없다. Carver나 Edgeworth의 租稅論은 Jhon Stuart Mill에 있어서의 課稅原理로 부터 出發한다. 때문에 우선 J. S. Mill의 功利主義에 立却한 租稅論을 明確히 分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正統學派의 隆盛과 完結, 그리고 決定的인 發展的 轉換點을 露呈시킨 사람은 John Stuart Mill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大著 「經濟學原理」(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은 當時 英國經濟學의 最高의 産物이었다. Leslie Stephen (1832—1904)의 말을 빌린다면 이 經濟學原理는 Adam Smith의 「國富論」(An inquiry in 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以後 刊行된 어떠한 著作도 이에 따를 수 없는 權威를 獲得한 것이다.註3) 여기서 論考는 우선 이 經濟學原理에서 다루어진 租稅理論, 平等犧牲說과 그 功利主義哲學을 考察하여 보려고 한다.

J. S. Mill은 그의 「自叙傳」(Autobiography, 1873)의 一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父親은 (羅馬法) 研究를 시작할 때 거기에 必要한 附隨物로서 大陸의 讀者 아니 世界를 위하여 Dumont (Pierre Étienne Louis, 1759—1829) 이 解說한 Bentham의 立法論을 引渡하여 주었다. 이 책을 읽은 것이 나의 生涯의 一新紀元이며 나의 生活史에 있어서 回轉點의 하나였다.』 Bentham의 精神上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James Mill(1773—1836) 을 通하여 그가 Benthamist가 된것은 理解될 수 있는 일이다. J. S. Mill은 『Bentham 의 所謂 "最大幸福"의 原則을 모든 곳에 適用하게끔 늘 敎示받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전혀 생소함을 喪失하지 않고 J. S. Mill 앞에 展開된 것은 J. Bentham의 抽象的 理論이었다.

J. S. Mill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나에게 새로운 感情을 준 곳은 J. Bentham의 「自然의 法則」이라든가, 「正當한 道理」「道德感」 또는 「自然의 公正」이라고하는것 같은 用語로부터 演繹되는 道德上, 法律上의 推論的樣式에다 批判을 내리고 그 것들은 모두 假面을 쓴 獨斷論으로서 터무니 없는 말로 음폐되고 있으며 實은 自己의 感情을 他人에게 强制하는 것이며 또 그 말까지도 實은 感情에 依據한 理由를 傳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感情 그 自體를 自己의 理由로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 本性을 暴露하고 있는 一章이었다. 나는 實로 그때까지 J. Bentham이 세운 主義가 그들 모든 俗說을 打破하여 버린것이라고 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註 3) Leslie Stephen; The English Utilitarians, vol. Ⅲ, P. 159.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在來의 모든 論說은 모두 넘어지고 思想上에 新時代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感이 내 가슴속에 크게 勃興하여 왔던 것이다. ……「關을 주어야 할 行爲」라고 하는 巨大하고 複雜한 問題에 對하여 「快苦의 結果」라고 하는 倫理原則을 指導原理로 하여 J. Bentham이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 使用한 細密한 方法에 따라서 科學的 分類가 適用되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을 때 나는 마치 어떠한 一段 높은 곳에 따라간 거기서 부터 一目中에 廣大한 心的 領域을 大觀하여 먼 沿岸까지도 知的 所産物이 멀리 擴大되어 있는 것을 찾아 낸것 같은 생각이었다』註4)는 것이다. 이와같이 J. S. Mill은 J. Bentham의 方法論을 배움과 同時에 그의 功利哲學을 一個의 信條로 하게끔 되었다.

『더욱 硏究를 進行함에 있어서는 知的 啓蒙에 依據하고 또한 社會의 實際的 改善의 有望한 前途가 展開하여 오는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나는 「立法論」을 읽었을 때 전혀 딴 사람이 되고 있었다. 즉 J. Bentham이 그것을 解釋한 것과 같이 理解되었다. ……「功利의 原則」은 나의 知識, 信仰의 斷片的인 構成要素를 結合시키는 礎石으로서 正確하게 合當하였다. 나의 事物에 對한 槪念에 統一을 賦與하여 주었다. 나는 비로서 이런 主義를 가졌다. 一個의 信條, 一個의 學說, 一個의 哲學等 이와 같은 말의 보다 좋은 意味의 하나에 있어서 一個의 宗敎를 갖게끔 되었던 것이다』. 註5)

이와 같이 完全히 J. Bentham 學徒로 된 J. S. Mill은 功利主義哲學에 關한 많은 論文(Dissertations and Discussions, 1859—1875)과 經濟學試論集(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1844.)을 씻고 自由論(On Liberty, 1859 과 功利主義(Utilitarianism, 1861年에 雜誌論文으로 써서 1863年에 獨立의 著書로 刊行됨)를 出版했다. 여기에서 「自由論」 特히 「功利主義」에 對하여 그 思想의 大要를 檢討하여 보겠다.

「自由論」의 目的은 極히 簡明한 一個의 原理를 主張하는데 있다. 즉 『人類가 個人的으로 或은 集合的으로 그들中의 어느사람에 있어서 行爲의 自由에 干涉할 경우 保證되는 唯一한 根據는 自衛의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自身의 善은 肉體的이든가 精神的이드라도, 充分한 保證은 아닌 것이다.』註6)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社會的 政治的 進步가 大體的으로 個人의 創意와 精力에 依存하는 事實

註 4) J. S. Mill; Autobiography, 2nd. ed., pp. 64—66.
西本正美譯; ミル自傳(岩波文庫) 77—79面.
註 5) J. S. Mill; ibid., pp. 66—67.
西本正美譯; 前揭書. 79—80面.
註 6) J. S. Mill; On Liberty, 3rd. ed., p. 13.
註 7) W. L. Davidson; Political Thought in England. The Utilitarians from Bentham to J. S. Mill, p. 281.

을 確信한 J. S. Mill은 個人의 完全한 發展을 求하는 個人性의 絶對的 主張者로서 出發하였다. 그러나 그는 「自由論」에 있어서 社會的 責務를 無視하는 것과 같은 拘束없는 自由를 認定하지 않는다.註7) 「思想과 言論의 自由에 대하여」(Of the Liberty of thought and Discussion), 「福利의 一要素로서의 個性」(Of Individuality, as on of the elements of Well-Being), 「個人을 支配하는 社會構成의 限界에 대하여」(Of the Limits to the Authority of Society over the Individual) 등의 여러 章은 決코 個人主義的原理에 依存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註8)

더구나 英國의 功利主義哲學은 J. S. Mill을 통하여 그 方法과 假定의 보다 充分한 考察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註9) 그러면 J. S. Mill의 功利主義는 어떠한 것인가. 本質的으로 功利主義原理가 그 反對原理에 劣等하다고 하는 斷定에 대한 反駁論으로서 著述된 「功利主義」를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J. S. Mill은 우선 J. Bentham의 科學的 方法에서 離脫했다. 그는 『直觀的 倫理學派는 歸納的 倫理學派와 같이 一般的 法則의 必要性을 主張한다. 그들은 다 같이 個別的 行爲의 倫理性은 直接的 知覺의 問題는 아니고 一法則의 個個의 경우에 대한 應用의 問題라고 主張한다. 그들 또 大體的으로 同一倫理法則을 認定한다. 그러나 그 證明, 및 그것이 權威를 갖게 되는 源泉에 關하여 見解를 달리하는 것이다.』註10)라고 말하고 있다.

繼續해서 J. S. Mill은 「功利主義는 무엇인가」(What Utilitarianism Is)라는 問題를 提示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功利라는 것은 幸福이며 따라서 幸福은 快樂으로서 苦痛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똑같이 不幸은 苦痛이며 快樂의 奪取인 것이다. 『最大幸福의 原理에 따르면 窮極의 目的은 量에 있어서나 質에 있어서도 可及的으로 苦痛을 적게하고 快樂을 많이 할 일이다.』註11). 더구나 J. S. Mill이 行爲標準으로 하는 幸福의 意義는 『行爲者自身의 幸福이 아니라 一切關係者의 幸福이다.』

註 8) Albee; A History of English Utilitarianism, p. 246.

註 9) Leslie Stephen; op. cit., p. 74.

註10) 「The intuitive, no less than What may be termed the inductive, school of ethics, insists on the necessity of general laws. They both agree that the morality of an individual action is not a question of direct perception, but of the application of a law to an individual case. They recognise also, to a great extent, the same moral laws; but differ as to their evidence, and the source from which they derive their Authority.」

(John Stuart Mill;「Utilitarianism,On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t」 Everyman's Library, J. M. Dent & Sons LTD. London & Toronto. E. P. Dutton & Co. New York. printed in Great Britain, Cloth, 482. (1929). "Utilitarianism" Chapter I. General Remarks, p. 2.)

(J. S. Mill; Utilitarianism, 5th. ed., p. 3.)

註11) J. S. Mill; ibid., p. 17.

『그 自身의 幸福과 他人의 幸福間에 있어서 功利主義는 그에게 公平하고도 仁慈한 傍觀者에 嚴格한 無私의 態度를 要求한다. 「나자레」의 「예수」의 垂訓에는 功利에 있어서 倫理의 完全한 精神이 發現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할려고 생각하는 일은 사람에게도 또한 그와 같이 하라. 또 나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功利主義倫理의 理想的 完成을 構成하는 것이다.』註12) 또 『만약에 功利主義가 倫理의 最高原則으로서의 神이 啓示한 意志를 認定하지 않는다고 理解된다면 나는 "神의 完全한 善과 知를 信賴하는 功利主義者는 반드시 이 倫理問題에 啓示할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功利의 要求를 充分히 滿足시킨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答辯할 것이다.』註13)

J. S. Mill의 功利主義哲學은 要컨데 觀念聯合主義者에 있어서의 功利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에는 租稅論과의 聯關性을 考察하기로 한다.

J. S. Mill에 의하면 國家機能의 合理性에 關해서는 異論이 많다. 그러나 오늘날 一般的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國家權威가 人間事實의 어떤 部門에 미쳐야 할 것인가 이다. 國家機能의 作用에 있어서 國家의 行爲가 어떠한 結果를 낳는가를 볼 때 國家機能을 必要의 機能과 任意의 機能으로 分別할 수 있다. 前者는 國家의 觀念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機能이며 後者는 國家가 作用하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疑問의 餘地가 있는 機能이다. J. S. Mill은 우선 國家가 必要하고 是認된 機能을 遂行하는 樣相에서 생기는 經濟的 結果를 考察하고 繼續해서 任意의 機能에 屬하는 國家的 干涉을 硏究하고 最後로 國家干涉이 實際上 適當하다고 할 수 있는 任意機能의 경우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인가를 硏究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國家가 그 存立의 條件인 收入을 얻기 위하여 採用하는 手段 즉 租稅의 理論을 前述한바와 같이 必要한 機能의 第一로 들고 있다. 註14)

J. S. Mill은 그 課稅原理에 있어서 A. Smith의 原則을 그대로 踏襲하고 그 第一原則을 功利主義와 結付시키므로서 한層 明確히 하고 있다. J. S. Mill에 의하면 第二以下의 原則은 特殊한 租稅에 關한 問題로서 原理論으로는 되지 않는다. 課稅의 平等을 主張하는 第一原則만이 充分한 硏究를 要求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註15)

『平等은 왜 課稅의 原理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政務一般에 있어서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다. 各人에 대하여 平等한 壓迫을 주기 위하여서는 全體에 대하여

註 12) J. S. Mill; ibid., p. 25.
註 13) J. S. Mill; ibid., pp. 29—30.
註 14)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dited by Ashley, pp. 795—801.
註 15) J. S. Mill; ibid., p. 803.

最小의 犧牲을 낳게 하는 것과 같은 方法을 採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政治의 原則인 課稅의 平等은 犧牲의 平等을 意味한다.』

이와 같이 平等犧牲의 原則을 確立한 後 그는 金錢에 의한 同等한 率의 貢獻이 事實上 犧牲의 平等을 意味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檢討한다. 그는『이 問題에 關하여 最善의 考察을 한 後 奢侈品에서 節約될 수 있는 租稅와 生活必需品에 侵入하는 것과 같은 租稅를 區別한다.』그러므로서 問題는 解決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J. Benthamol 따라서 生活必需費額에 대한 免稅를 主張하는 것이다. 이 免稅額은 生命健康을 위하여 必要하며 肉體的 苦痛에서 견딜 수 있는 所得額以上으로 높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註16)

J. S. Mill을 가리켜 平等犧牲說의 創始者라고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으나 事實은 그렇치 않다. 그러나 그는 이 平等犧牲의 原理에서 累進說의 結論을 抽出한 最初의 사람이었다.註17) 즉 J. S. Mill은 이와같은 原理에서 出發한다면 累進稅에 到達할 수 있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國家가 課稅를 標準으로 하여 富의 不平等을 緩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明白한 理由下에 英國과 大陸에 있어서는 累進稅가 主張되고 있다. 나는 이와같은 等等의 不平等을 減少하기 위하여 이런 手段이 採用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과 다 같이 希望하는 바이나 勤勉한 者를 犧牲으로 해서 怠惰인 것을 救濟한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註18) 그러나 J. S. Mill에 있어서의 平等犧牲의 正當한 意義로 보아, 課稅比例의 標準이 그 所有하는 것이 아니라 消費할 수 있는 것에 存在 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言明하고 있는 바다. 註19)

平等의 犧牲으로 부터 出發하여 累進稅論에 到達하지 못한 者는 J. S. Mill外에 Karl Heinrich Rau(1792—1870), Eduard von Pfeiffer(1835—1921) 等이 있다는 것은 Edwin Robert Anderson Seligman(1861—1939)이 指摘하는 바와 같다. 그後 效用理論의 精密한 硏究, 特히 限界效用說의 勃興은 同一原理에서 出發하여 累進稅의 合理性을 科學的으로 說明할려는 傾向을 보였다. J. S. Mill이 比例稅에 脫却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效用槪念의 缺如에 基礎한다고 할 수 있다. 元來 이 課稅原理가 上述한 功利主義哲學을 根底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疑問할바 없는 것이다. J. S. Mill 自身의 生涯를 통하여 일어난 思想的 變化를 論外로 하고라도 法律의 客觀的 標準으로서의 功利主義哲學과 國家機能의 擴大는 租稅로 하여금 犧牲의 觀念이 되게 함과 同時에 平等課稅의 原則을 樹立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功利主義哲學은 Thomas. N. Carver 나 Francis Y. Edgeworth

註 16) J. S. Mill; ibid., pp. 806—807.
註 17) E. R. A. Seligman; Progressive Taxation, (2nd edition), p. 154. 參照.
註 18)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dited by Ashley, p. 808.
註 19) J. S. Mill; ibid., p. 817.

에 의하여 效用理論과 密接하게 結付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平等犧牲說에서 最小犧牲說에의 發展이었던 것이다.

四. 功利主義와 最小犧牲說

平等犧牲說에서 最小犧牲에로의 發展은 어떻게 進展되어 갔는가를 여기에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Thomas N. Carver에 의하면 義務의 一般的 原理에 關한 問題는 經濟學의 範圍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功利主義의 原理를 그대로 容認하고 國家도 역시 個人과 같이 一般的 福祉, 말하자면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增進시켜야 할 것을 假定한다. 그러면 國家는 어떻게 하면 租稅問題에 關하여 一般的 福祉를 增進할 수 있는 것인가. 國家는 多數人의 結合行爲形式에 대한 抽象的 名詞에 不過한 것이나 더구나 立法을 통하여 그 意思를 强制하는 경우의 行爲는 特殊한 責務를 띠고 있는 것이다. 勿論 課稅에 關한 國家 責務의 問題는 租稅徵收後에 있어서의 支出의 問題와는 別個로 論究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支出의 경우에 있어서 國家는 積極的으로 一般的 福祉를 增進할 수가 있겠으나 單純한 課稅에 의하여서는 一般的 福祉를 增進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明白하기 때문이다. 註1)

T. N. Carver는 一般的 功利의 原則으로 부터 出發하여 租稅를 害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하기를 『一般的으로 租稅의 徵收는 그自體에 있어서 害惡하다.』註2)는 것이다. 『租稅는 一個의 害惡인 同時에 負擔이며 課하여진 犧牲이기 때문에 功利의 原則은 明白히 이와 같은 것을 可及的이면 적을 것을 要求한다. 즉 租稅는 最小의 犧牲을 課하는 것같이 賦課徵收되고 收入은 最大의 利益을 賦與하는 것같이 支出될 때 보다 잘 功利의 原則에 適合하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註3)

Thomas. N. Carver에 의하면 租稅의 犧牲에는 2種이 있다. 그 하나는 納稅者에 대한 直接的 犧牲이며 그들은 產業企業에 대한 抑壓의 間接的 結果이다. 이와 같은 故로 租稅의 負擔은 功利의 原則에 따라서 이와 같은 害惡의 2個形態의 總和가 可及的 적게끔 分配되지 않으면 안된다.

抑壓의 最小는 모든 사람에게 平等한 犧牲을 주게끔 租稅를 分配함으로써 達成될 수 있다. 즉 抑壓的 結果만을 考察하면 犧牲의 平等은 最小數의 最小害惡을 意味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納稅者의 犧牲만을 考察한다면 犧牲의 不平等이 오

註 1) Thomas. N. Carver; Essays in Social Justice, pp. 394~395.

註 2) Thomas. N. Carver; Essays., p.396.
Ethical Basis of Distribution(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VI), p. 95.

註 3) Thomas. N. Carver; Essays., p. 396.

히려 이러한 結果를 낳게 될 것이다. 富者 B의 1弗은 貧者 A의 1弗보다 效用이 적다 그러기 때문에 참다운 犧牲平等은 B에게 보다 많이 課稅함으로써 이를 達成하게 된다. 따라서 一定한 稅額徵收에 있어서 우선 第一所有者의 收入으로부터 그 다음의 收入과 同等하게 될 때까지 租稅를 徵收하여 漸次的으로 差額의 全部를 徵收하게 되어, 이 第二의 收入이 第三의 收入을 超越하는 額을 徵收하고 以下 順次的으로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하여 課稅하는 것이 租稅犧牲을 最小로 하는 所以인 것이다. 이것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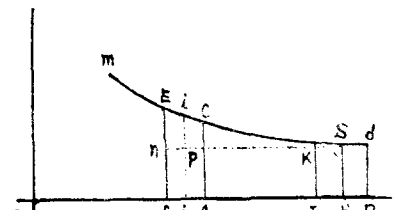

OA는 A의 收入, OB는 B의 收入을 表示한다. md를 兩收入의 效用曲線으로 하면, A의 限界效用은 CA, B로 된다. dB를 가지고 h에 대한 課稅로 하고 fA를 A에 대한 課稅로 하면 ECAf와 SdBh의 表面積이 同等하게 될때 平等한 犧牲額이 얻어질 것이다. 그러나 B에 대한 稅額을 Ih만 增加하고 A에 대한 稅額을 fj만 減少한다면 全面的으로 보아 犧牲은 적어 진다. 즉 Eijf가 kShI을 超越하는 額, EiPn의 圖表上의 面積만이 兩者에 있어서 犧牲額이 적어진다. 따라서 限界犧牲의 平等이 全體에 있어서 最小의 犧牲으로 되는 것이다. 註4)

이리하여 Thomas. N. Carver는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한다. ——"直接犧牲의 最小總量은 犧牲의 平等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限界犧牲의 平等에 의하여 達成된다."註5)는 것이다. 그 結果는 極端的인 累進稅論에 이끌린다. 最小犧牲은 보다 얕은 限界效用을 갖는 數個의 收入으로 부터 全租稅를 徵收함으로써 確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極端的인 累進稅는 產業企業을 壓迫하게 될 것이다. 즉 第二의 間接的 影響을 考慮하여 直接犧牲에 關한 考察로 부터 생기는 極端的인 累進論을 緩和하고 이 2個의 犧牲을 同時에 考察함으로써 適當한 累進率을 찾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註6)

그러나 이러한 累進率緩和의 問題는 Th. N. Carver에 있어서의 基本的 課稅原理가 아니다. 그것은 單純히 實際上의 適用에 대한 政策的 制限에 不過하다. 理論上의 結論이 最小犧牲說이라는 것은 上述한 바와 같으며 또 J. S. Mill에 대한 다음과 같은 批評은 이 點을 더욱 明瞭하게 할 것이다. 즉 J. S. Mill은 課稅에 있어서의 正義의 標準으로서 平等犧牲說을 主張하였으나 直接的 犧牲에 關한 推

註 4) Thomas. N. Carver; Ethical Basis of Distribution, p. 96.
註 5) Thomas. N. Carver; Essays., p. 404.
註 6) Thomas. N. Carver; Ethical Basis of Distribution, pp. 97~98.

理를 誤認했다. 틀림 없이 欲望과 그 充足에 關한 分析을 怠慢히 하였기 때문이다.註7) Thomas N. Carver에 있어서 功利主義와 效用理論과의 關係는 大略 以上과 같은 것이다.

上述한 Thomas. N. Carver와 같이 「純粹功利主義哲學의 直接的 派生物인 最小犧牲은 課稅의 最高原理」註8)라고 論하는 Francis. Y. Edgeworth가 있다. 그에 의하면 課稅의 功利主義的 原理는 納稅者가 받는 犧牲을 負擔分配上의 主要因으로 한다. 그러나 이 犧牲說은 純理論으로서의 資格을 가지는 것으로서 客觀的인 能力說은 理論的 硏究의 範圍에 屬하지 않는다. 註9)

J. Bentham의 功利主義哲學이 그 本質에 있어서 個人主義的 立場에 立脚함에도 不拘하고 法律의 客觀的 標準으로서 說明될 경우에는 社會的 規範槪念으로 되며 또한 J. Bentham 自身에 있어서 이 關係가 아직 明瞭하지 못 하다는 것은 事實이다. Francis. Y. Edgeworth도 역시 이와 같은 問題에 關하여 說明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結局 積分槪念으로서의 功利論을 가지고 功利主義哲學의 正當한 解釋으로 看做한다. 즉 『取得되는 總效用이 個個의 경우에 따라서 혹은 보다 크게 되며 혹은 보다 적게 되는 것과 같은 一切의 分配原理中에 있어서 集合效用이 個個의 경우에 따라서 極大로 되는 것 같은 原理는 結局 個人的으로 最大의 效用을 주어야 할 可能性을 보다 많이 갖는 것이다.』註10) 그는 理論을 科學的으로 成立시키기 위하여 課稅가 個人側에 있어서 價値의 喪失인 點에서 效用槪念에 非效用을 가지고 代置한다. 즉 그에 의하면 『課稅에 의하여 얻어지는 總純效用이 極大로 되는 것같은 條件은 總非效用이 極小로 되어야 할 條件으로 歸着한다. 이와 같은 總非效用이 極小로 되어야 할 條件에서 一般的으로 各納稅者의 限界非效用은 同一해야 한다는 原則이 생긴다.』註11)는 것이다. 이리하여 課稅原理로서의 限界犧牲均等의 法則은 그 立論의 形式과 結果에 대하여 完全히 功利主義哲學과 合致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最小犧牲說에 있어서의 基本理論이 必然的으로 累進稅의 主張으로 된다는 것은 極히 明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累進稅論은 最小犧牲說의 特徵이라고 할 수 없다. 平等犧牲說에 의해서도 역시 累進稅를 說明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J. S. Mill은 效用槪念의 分析을 怠慢히 했기 때문에

註 7) Thomas. N. Carver; Essays., p. 403.
Thomas. N. Carver; Ethical Basis of Distribution, p. 95. 參照.
註 8) Francis. Y. Edgeworth; Papers Relating to Political Economy, Vol. II (The pure Theory of Taxation), pp. 106~107.
註 9) Francis. Y. Edgeworth; ibid., p. 100 參照.
註 10) Francis. Y. Edgeworth; op. cit., pp. 102~103.
註 11) Francis. Y. Edgeworth; op. cit., p. 103.

生活費免稅額을 認定한데 不過하며 累進稅로 부터 脫脚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Robert Meyer 같은 사람은 平等犧牲에서 出發하여 累進稅의 根據를 明白히 說明하고 있다. 이러면 最小犧牲의 原理와 平等 혹은 比例犧牲의 原理는 理論上 어떻게 區別되어야 할 것인가. 이 問題에 대하여 Francis Y. Edgeworth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最小犧牲說以外에 平等犧牲 및 比例犧牲의 原理가 있다. 이와 같은 2個原理의 實際的 結論을 우선 考察하고 繼續하여 그 理論的 證明의 檢討로 옮기겠다. 이들은 다 같이 D. Bernoulli의 法則[註12]에 따라서 效用은 財貨와 反比例로 減少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前提에 의하면 平等犧牲의 原理에서는 比例稅論이 생기고 比例犧牲의 原理에서는 累進稅論이 導出된다. 그러나 이 前提는 옳지는 못 하다. 效用은 收入의 增加와 함께 遞減하기 때문이다. 觀察되는 對象이 事實上 Bernoulli의 法則과는 一致하지 않을 것이다. 또 極히 巨大한 收入을 呈示하는 경우의 Bernoulli의 曲線에 대해서는 아직 疑問의 餘地가 있다. 이러한 경우

註 12) 베르누이의 法則은 「流體에 있어서의 壓力과 速度와의 關係를 說明하는 Daniel Bernoulli(“1700～1782„ 스위스의 理論物理學者. Jacques. Bernoulli(1654～1705)의 아들로서 그는 1725年에 뽑 Petersburg 大學의 數學敎授를 지냈으며 그 뒤에 Basel大學 物理學敎授가 되었다. 剛體運動 병진과 회전으로 나누는 것이 便利한 것을 最初로 指適하였다. 流體運動·판의 진동 등에 관한 數學的硏究를 하였다. 著書 Hydrodynamica, “1738„ & works on acoustics, astronomy, etc.)의 發見에 의한 法則. 完全流體가 時間的으로 變하지 않는 狀態에서 흐르고 있을 때 그 流體안에 그림과 같이 흐름의 方向을 따라 하나의 流管을 생각할 수 있다. 이 流管의 斷面 S_1로 들어간 流體는 언제나 流管안의 一定한 經路를 지나서 斷面 S_2로 나오므로 單位時間에 S_1 S_2를 通過하는 流體의 energie는 같다. 지금 流體의 密度를 p, 流管의 斷面積을 S_1, 그 部分을 지나는 流體의 速度및 靜壓을 各各 V_1, P_1이라하고, 斷面이 어떤 標準面으로 부터 h의 높이에 있다고 하면 斷面 S_1을 單位時間에 通過하는 流體의 量은 $\rho V_1 S_1$이며, 그 流體의 energie E_1은 다음의 各 energie의 總合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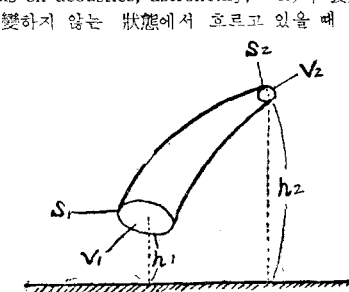

Bernoulli 의 定理

運動 energie=$1/2(\rho V_1 S_1)\ V_1^2$, 위치 energie=$(\rho V_1 S_1)\ gh_1$, 壓力 energie=$P_1 S_1 V_1$가 된다. 따라서 $E_1=1/2\ (\rho V_1 S_1)\ V_1^2+(\rho S_1 V_1)gh_1+p_1 S_1 V_1=1/2\ \rho V_1^2+\rho gh_1+p_1)\ S_1 V_1$이 된다. 이와 똑 같이 流管의 임의의 斷面 S_2를 單位時間에 通過하는 energie E_2는 $E_2=(1/2\rho\ V_2^2+\rho gh_2+p_2)\ S_2 V_2$가 된다. 그러나 그 斷面을 지나는 流體의 量과 energie는 같으므로 $V_1 S_1=V_2 S_2$, $E_1=E_2$이다. 따라서 $1/2\rho\ V_1^2+\rho gh_1+\rho_1=1/2\rho\ V_2^2+\rho gh_2+\rho_2$=일정. 윗식에서 水平한 管속을 흐를 때 h=O이므로 $1/2\rho V_2+\rho$=일정하다. 이와같은 關係式을 Bernoulli의 法則(定理)이라고 한다. 따라서 管의 가는 部分은 굵은 部分보다 速度가 큰 대신에 壓力 p가 작아진다.

에 있어서의 이 效用曲線의 特質은 아직 充分히 證明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第一로 資本還元에 關해서는 어째서 Bernoulli의 法則以上의 速度로써 飽和點에 達할 수 없는가. 또 어째서 繼續的 效用增加量間의 比率은 Bernoulli의 法則에 따르는 以上의 速度로써 增加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收入增加와 함께 생기는 限界效用의 減少가 Bernoulli의 法則을 超越한다고 假定한다면 平等犧牲說도 比例犧牲說과 함께 累進稅論에 到達한다. 單只 그 累進率은 後者가 前者보다 높다고 하는데 不過하다. 이 點에 있어서 類似犧牲說이 이 二原理는 非效用의 考察에 의해서 限定되야 할 最小犧牲說과 恰似하다.」註13)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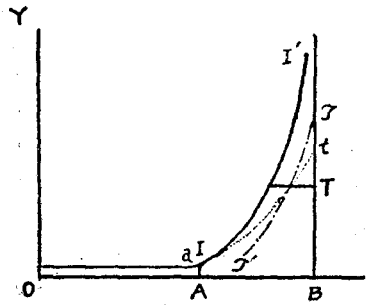

Francis. Y. Edgeworth는 이와 같은 犧牲說의 各種의 類型을 다음과 같은 圖表로써 表示하고 있다.

OY軸에 따라서 測定되는 Y는 收入의 크기, 曲線 II'는 Y에 대한 座標가 Y보다도 적은 收入의 數를 表示하는 것 같이 그린 것이다(Pareto Vilfredn, 1848—1923」收入曲線論에 基礎한 것이다). OB는 收入의 總數. Aa는 免稅小額을 表示한다.

여기서 最小犧牲의 原理를 適用할 때 이 경우 B를 통한 縱軸을 設定하고 이 線上의 一點 T를 通한 縱軸 및 橫軸과 曲線 II'에 의하여 둘여쌓이는 面積이 課稅額과 同等한 國民所得을 表示하는 T點을 求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比例稅의 原理를 適用하면 같은 縱軸上에 다음의 條件을 充足시킬 t點을 찾아 내면 될 것이다. 즉 必要한 稅額이 이 B點上의 縱軸 II' 曲線 및 縱軸y가

$$(y-\eta)\times\frac{du}{dy}\div u=C.$$ ※ u는 所得 y로부터 얻을 수 있는 總效用額.

일 條件을 그 모든 點에 있어서 充足시키는 曲線에 있어서 圍統되는 面積과 같으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平等犧牲의 原理를 適用하면 같은 縱軸上에 租稅의 必要額이 이 縱軸, 曲線 II' 및 η가

$$(y-\eta)\times\frac{du}{dy}=C.$$

인 條件을 充足시키는 曲線에 의하여 圍統되는 面積과 같게금 T點을 求하면 되는 것이다. 註14)

註 13) Francis. Y. Edgeworth; Essays., op.cit., pp.107~111.
註 14) Francis. Y. Edgeworth; op. cit., pp. 111~112.

여기에서 類似犧牲說의 理論的 究明에 돌려야 하겠다. 여기서 지금 問題視하는 原理가 功利主義의 最高原理와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決定함으로써 이 說의 正當性은 立證될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 만약에 類似犧牲이 直感的 正義에 의해서 規定된다면 이러한 關係는 一個의 完全한 自律로 된다. 그러나 功利主義者는 이러한 imperium in imperio(命令의 命令)를 容認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不透明한 類似犧牲說에 反對할 것이다. 比例犧牲說이나 平等犧牲說과 다같이 效用曲線이 Bernoulli의 法則에 의하여서만이 主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前提는 決코 正當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들 類似犧牲說을 다른 見地로 본다면 더구나 妥當하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에 平等犧牲이 比等限界犧牲과 같다고 한다면 如何한 條件이 非效用의 最小를 決定하는 것인가. 前述한바와 같이 J. S. Mill은 平等犧牲과 最小犧牲의 原理를 같이 主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分明히 그 課稅改革의 主張에 있어서 平等犧牲의 原理보다도 平等에 對한 純功利主義的 推理法을 使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外에 John Ramsay Mc Culloch Robertt Meyer 等에 있어서도 類似犧牲의 原理와 純功利主義哲學과의 關係가 明白하지 않다. 事實 이와 같은 關係에 대하여 어떻한 見解를 取하든가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인 最高原理로부터 獨立된 行爲의 範疇는 意味가 없다는 것이다.註15)

이와 같이 Francis. Y. Edgeworth는 課稅論이 結局功利主義哲學에서 離脫할 수 없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平等犧牲說에 代置된 이 最小犧牲說은 그 實際的 適用方面에 있어서 極히 明確하다. 그에 의하면 『平等犧牲 代身에 最小犧牲을 使用함으로써 우리는 여 이 原理가 適用되어야 하는가의 問題에서 생기는 形而上學的 雲霧를 四散시킬 수 있을 것이다.』註16)라고 論하고 있다. 그는 以上과 같은 問題는 最小犧牲說을 가지고 立法原理로서의 功利哲學으로 부터 생기는 推論으로 看做하는 것에는 無關係인 것이다.

그는 또 最小犧牲說이 平等犧牲說보다 優越하다는 所以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아직 平等犧牲說은 그 推論에 있어서 明確性을 缺如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種類의 結論에 到達시키기 위하여서는 效用遞減의 率에 關하여 어떠한 假定을 必要로 하며 더구나 心理的인 어떠한 것과도 物質的인 어떠한 것間에 精密한 關係를 確立하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最小犧牲의 原理는 그 推論의 過程에 있어서 效用과 財貨의 正確한 關係를 想定치 않는다. 그것은 단지 一般的으로 認定된 效用遞減의 事實만을 假定하는데 不過하다. 또 平等課稅에는 平等(本來의 意味의)과 比例의 二形態가 있으며 그 때문에 槪念의 混亂이 생긴다.』註17)

註 15) Francis. Y. Edgeworth; op. cit., pp. 113~116.
註 16) Francis. Y. Edgeworth; op. cit., p. 117.
註 17) Francis. Y. Edgeworth; op. cit; p. 117.

는 것이다. 그러나 功利主義의 原理에 基因한 最小犧牲說은 分明히 이와 같은 不明確한 前提, 말하자면 槪念의 混亂으로부터 逃避할 수가 있다. 即 『功利主義哲學인 流星은 經驗으로부터 먼 對岸에서 빛나며 純理論의 빛을 가지고 보다 强力한 航路를 빛이고 있다』.註18)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結論이다.

Francis. Y. Edgeworth에 의하면 類似犧牲(比例犧牲 或은 平等犧牲)의 原理로부터 累進課稅論을 導出하기 위하여서는 效用遞減法則 以外에 未知의 素材가 必要하다. 그러나 最小犧牲의 原理에 있어서는 이러한 未知의 問題를 假定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Edwin Robert Anderson Seligman(1861—1939)은 그의 累進稅(Progressive taxation, in theory and practice.)에서 以上의 說明을 註譯하여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二個의 批判을 하고 있다.

① 平等犧牲說에 있어서 槪念의 混亂은 없다. 『經濟學者가 平等犧牲이라고 할 때 그것은 比例犧牲의 意味이다. 그러므로 平等犧牲이라는 것은 比例犧牲을 表示하는 粗雜한 方法에 不過하다. 數學的 意義에 있어서 絕對的 平等犧牲을 主張한 것은 내가 아는 限에 있어서는 한사람도 없다.』註19)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Francis. Y. Edgeworth는 『古典的 著作에 있어서 異論있는 文章의 解釋에 關하여 이 文章이 다른 意味를 갖는다고 하여 著者自身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은 註譯者를 나는 좋아 하지 않는다. 그리고 E. R. A. Seligman에 대한 나의 反批判은 나 自身에 있어서 그다지 意義가 없다는 것을 告白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問題에 있어서 E. R. A. Seligman이 取하는 立脚點은 事實上 나의 重要理論——最小犧牲說에 보다 有利한 立場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J. S. Mill이 平等犧牲을 E. R. A. Seligman이 論한 바와 같이 理解한다면 그는 平等犧牲과 最小犧牲의 두가지 原理를 다같이 同一口辯을 가지고 說明한 것이 된다.』註20)고 答한다.

② Edwin. R. A. Seligman에 따르면 最小犧牲의 原理는 決코 다른 主觀論보다 더욱 有效한 것은 아니다. 이 批判은 Weston縱「正義와 犧牲」에 追從하고 있다. Weston은 數理經濟學者가 正確한 數學的 表現을 許容치 않는 原理를 數學的으로 基礎를 만들고 滿足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한다. Francis. Y. Edgeworth는 이에 대하여 『이러한 批評은 最小犧牲說이 效用과 財貨의 何等의 正確한 關係를 假定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의 說明을 基礎로 한다. 내 說明의 眞意는 最小犧牲의

註 18) Francis. Y. Edgeworth; op. cit., p. 112.
註 19) Edwin. R.A. Seligman; Progressive taxation, in theory and practice. pp. 213~215.
Francis. Y. Edgeworth; op. cit., p. 236. 參照.
註 20) Francis. Y. Edgeworth; op.cit., p. 237.

原理가 數學的 推理의 特質을 放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平等犧牲의 原理에 必要한 一切의 素材를 要求치 않는다는 意味이다.』註21)라고 答하고 있다.

五. 結　　論

以上과 같이 功利主義를 基礎로 하는 租稅分配의 原理를 平等犧牲說과 最小犧牲說을 比較究明하여 보았다. 이 兩說에 대한 若干의 批判을 加해왔으나 結論에서 總括的으로 批判的 分析을 하려고 한다.

John Stuart Mill에 의하면 國家政策은 一般的으로 平等을 窮極의 原理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租稅分配의 原則도 또한 當然히 이것에 準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課稅는 個人의 側面에서 말하자면 價値의 喪失이며 犧牲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犧牲을 平等하게 하는 것이 租稅分配의 窮極的 原理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平等犧牲說을 取하는 사람은 단지 John Stuart Mill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例를 들면 Henry Sidgwick(1838—1900)註1)도 또한 功利主義的 立場에서 平等犧牲說을 取한 사람의 하나이다. Henry Sidgwick는 말하기를『租稅는 모든 사람에게 可及的이면 平等한 犧牲을 賦與하게끔 分配되지 않으면 안된다.』註2)는 것이다.

이와같이 平等의 犧牲을 力說하는 것은 좋으나 課稅의 窮極的 原理로서의 平等犧牲을 主張하기 위하여서는 各人이 同等한 條件에 存在할 것을 必要로 한다. 即 平等犧牲을 課稅의 窮極原理로서 承認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이 類似한 條件

註 21) Francis. Y. Edgeworth; op.cit., p. 239.

註 1) H. Sidgwick는 英國의 哲學者, 倫理學者이며 經濟學者이다. Cambridge 大學에서 道德哲學敎授(1838～1900). Newnham College設立에 주력하고 Sidgwick의 妻(Eleanor Mildred Balfour "1845～1936„; A. J. Balfour의 여동생.)은 校長으로 있었다(1892～1910). 心靈學에도 興味를 가지고 "Society of Psychical Research„를 創立하고 그 初代會長을 歷任하였다(1882). 初期의 著作, Method of Ethics, 1874.를 내고 各種의 倫理學體系를 批判的으로 叙述하고 功利主義의 立場에서 새로운 基礎를 賦與하기 위하여 一種의 直覺主義를 이것에 結付시키려고 하였다.
이와같이 그는 또 經濟學者로서 John Stuart Mill의 影響을 받고 功利主義의 歷史에 重要한 寄與를 한 點에서 注目할 價値가 있다. 또 經濟學의 領域에 있어서는 ① 價値論에 관하여 需要供給說에 補正을 加하고 ② 國際價値學說에 관하여서는 運送費의 重要한 意義를 갖는 點을 强調하고 ③ 地代에 관하여서는 그 歷史的 起源, 靜的 또는 動的 觀察을 分離하여 생각한 點에 있어서 經濟學說史上 無視할수 없는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主著로서는 前記한 以外에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83.
The Scope and Method of Economical Science. 1885.
Outlines of the History of Ethics. 1886.
Practical ethics, 1898. etc.

註 2) Henry Sidgwick;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3rd. edition, p. 565.

下에 있을 것을 豫想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에 類似한 條件下에 있다고 하면 平等犧牲은 옳은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種類의 條件을 豫想한다는 것은 事實에 適合하지 않다. 여기서 平等犧牲說의 破綻이 온다. 勿論 平等犧牲說을 主張하는 者는 이와같은 條件을 豫想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一般的으로 平等犧牲說은 理論으로서나 實踐의 原理로서도 破綻에 이끌린다. 그것은 形式的인 平等犧牲의 理念을 功利主義哲學에 關聯시키고 그리하여 이것을 租稅分配에 있어서의 實踐의 原理로 한데 不過한 것이다.

各人이 同等한 條件下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數學的 意味에 있어서의 平等犧牲說은 廢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不平等한 犧牲이 오히려 眞實한 平等犧牲을 意味하는 것이 될 것이다. 勿論 平等犧牲의 理念 그 自體는 틀린 것은아니다. 그러나 各人이 同等한 條件下에 있는 것을 豫想한다는 것은 虛構의 事實로서 이러한 事實위에서만 形式的 平等犧牲說에 의해서 比例分配를 說明하는 것은 分明히 誤謬인 것이다. 이리하여 平等犧牲의 理念을 眞實한 모습에까지 따고 들어 가면 上述한바와 같은 形式的 平等犧牲說은 崩壞할 것이다.

客觀的 條件의 差異는 效用理論이 擡頭함에 있어 어느 意味에 있어서는 科學的 分析을 遂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點에서 特히 功績이 있는 學者는 Emill Sax와 그外 몇몇 學者들이다. 그들은 限界效用에 대한 價値論을 基礎로하여 累進分配의 根據를 明白히 하였던 것이다.

經濟를 欲望과 充足이라는 關係에서 볼 때에는 個人經濟에 있어서나 公共經濟에 있어서도 다 같이 經濟를 問題로 하는 點에서 이러한 學說은 欲望論에 理論的 根據를 두는 것이 一般的이다. 本來 欲望의 理論的 槪念은 單一性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個人經濟의 경우나 公共經濟의 경우도 同一하다. 그러나 단지 具體的인 欲望이 어떠한 組織을 통하여 充足되는 것인가하는 點에서 欲望의 現象形態에 差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市場經濟를 통하여 充足되는 欲望과 어떠한 社會組織에 의하여 充足되는 欲望과의 區別이 생길 수 있다. 勿論 財政學者들은 어떠한 社會組織에 의해서 充足되는 欲望을 問題로하고 이것을 共同需要 또는 集合欲望이라고 부르고 있다. 即 經濟主體인 公共體 및 個人은 欲望이라고 하는 同一한 論理的 槪念을 가지고 있으나 具體的 欲望充足의 過程에 있어서 제각기 相異한 領域을 占有하고 私經濟는 純全히 個人欲望을 財政의 共同需要 또는 集合欲望을 問題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 Gustav. Cassel (1866—1945)은 이와같은 集合欲望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集合欲望은 近代文明社會에 있어서 極히 包括的인 集團을 構成한다. ……이러한 包括的인 集合欲望을 充足하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巨大한 經濟的 强制組織國家가 要求된다. 勿論 國家本質의 決定으로서는 그것이 아직 充分한 特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經濟學的 見地에서 보면 國家는 一國民의 一般的 集合欲望을

充足하기 위하여 巨大한 强制組織으로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며. 또 國家의 本質的 機能은 이 欲望充足을 위하여 必要한 그 經濟行爲中에서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曖昧한 말이 浪費되고 있는 國家의 必然性이 純粹한 經濟的 考察의 基礎위에서 비로소 明白히 된다. 이 純粹한 集合欲望의 性質에 基因한 必然性은 財政學의 出發點으로 하여야 된다. 이에 대하여 特殊科學은 本質的이고 必然的인 範圍가 最初로부터 論理的 必然性을 가지고 決定되고 있는 一個의 確固한 核心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財政學은 ——極히 重要한 일이나—— 經濟學과의 有機的으로 相互關係에 있어서 說明될 수 있다.』註3)는 것이다.

集合欲望을 財政學의 出發點으로 한 사람은 決코 Gustav Cassel에 의하여서만 主張된 것은 아니다. 그는 財政學上에 있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問題로 삼았던 것이다. Adolf Heinrich Gotthilf Wagner(1835—1917)와 같은 사람도 個人欲望과 集合欲望을 區別하고 集合欲望을 人類의 社會的 本質 또는 人類의 共同生活로 부터 생기는 欲望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Adolf. H. G. Wagner는 有形財貨로써 充足시킬 수 있는 物質的 欲望의 大部分은 個人欲望이며 人類間의 社會的關係에 基因하는 目的設定에서 생기는 欲望을 集合欲望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集合欲望을 一般的 集合欲望과 特殊的集合欲望으로 區分하고 다시 後者를 場所的 時間的 階級的으로 區分하고 있다. 註4)

그러나 集合欲望을 보다 論理的으로 다루고 이것을 唯一한 根據로서 財政學을 證明한 사람은 上述한바와 같이 Emil Sax이다. E. Sax는 公共經濟를 個人經濟와 同一한 基本關係로 이끌어서 個人經濟에 있어서 欲望充足의 理論을 그대로 公共經濟으 適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公共經濟를 純理論的으로 基礎가 되게 하는 唯一한 方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一切의 社會形態는 自然人의 集合으로서 國家도 역시 이러한 例에 벗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國家도 단지 個人에 從屬하는 것이며 그 活動은 集合體로서의 個人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經濟現象의 完全한 理論은 共同經濟現象과 私經濟現象을 同時에 體系的으로 다룬 것이 아니면 안된다. 即 前者를 內面的 等質物의 形式上의 差異로서 把握한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 E. Sax에 의하면 經濟는 欲望充足活動이다. 이것이 個人經濟와 共同經濟에 있어서의 等質物이다. 그러면 이러한 等質物의 形式上의 差異는 무엇인가. 그것은 欲望의 形態에 있어서 생기는 個人欲望과 集合欲望이다. 即 그는 一切의 人間欲望을 個人欲望과 集合欲

註 3) G. Cassel; Theoretische Sozialökonomie, IV. Aufl., 1927, S. 59.

註 4) Adolf. H. G. Wagner; Grundlegung., I. S. 252ff. Vgl. E. Sax; Grundlegung der theoretischen Staatswirtschaft, S. 183.ff.

望으로 區分한다. 各人은 個人欲望以外에 他人과의 政治的 結合으로 부터 생기는 다른 欲望을 갖는다. 이것이 財政學에 있어서 다루어야할 集合欲望이다. 따라서 集合欲望은 充足시켜야할 組織으로서 이러한 欲望의 主體는 아니다. 欲望의 主體는 國家를 構成하는 個人이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目的을 設定하고 感情을 가지며 그리하여 行動할 수 있는 것은 國家라고 하는 抽象物이 아니라 具體的인 精神을 갖는 個人이라는 그 要素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集合欲望이나 個人欲望도 다 같이 個人經濟에 還元된다. 이와 같은 二種의 欲望은 結局 個人에 의하여 統轄하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經濟를 支配하는 原則은 그대로 共同經濟에도 妥當하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E. Sax는 集合欲望의 槪念을 세웠으나 이 集合欲望은 單純히 組織上에 있어서 表面的으로 나타나는 形式槪念에 不過하다. 이것을 支配하는 原理는 結局 個人經濟를 支配하는 心理的 經濟價値論에 不過한 것이 된다. 事實 E. Sax는 共同經濟가 이러한 經濟價値를 標準으로 하여 決定한 點에서 그 純經濟理論的으로 解明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即 그가 말하는 財政의 純經濟理論的 說明에 의하면 各人이 어느 程度의 財貨를 集合欲望의 充足을 위하여 獻納할 것인가의 問題는 各個人으로 부터 徵收되는 財貨의 限界效用에 의하여 決定된다. 課稅의 平等, 負擔의 均衡이라고 하는 것은 强制獲得된 價値의 平等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財貨의 價値는 그 限界效用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므로 課稅의 平等은 徵收되는 財貨의 限界效用이 同等한 狀態를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貧富의 差가 相異한 各個人으로부터 徵收되어야할 財貨量은 當然히 差別的으로 되지않으면 안된다. 即 租稅는 財貨所有量의 增大에 比해서 累進的으로 增加되어야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累進稅는 일단 純經濟理論的으로 心理主義價値論의 基礎가 되고 있는 것이다.註5) 財政을 個人經濟에 還元시켜서 이것을 純經濟理論的으로 說明한 學者는 Esax 以外에 Friedrich von Wieser(1851—1926)註6), Antonio de Viti de

註 5) Emil Sax의 財政理論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諸 著書를 參照.
E.Sax; Grundlegung der theoretischen Staatswirtschaft, 1887.
E. Sax; Die progressivsteuer,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 Bd. I, 1892.
E. Sax; Die Wertungstheorie der Steuer,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und Sozialpolitik, N.F.Bd.IV, 4~6 Heft, 1924.
井藤博士; 租稅原則學說の 構造と 生成. 497~512面.
永田 淸; 財政學槪說 上卷 90面.
Lewis. H. Haney; History of Economic Thought, New York, 1949. pp. 622~628. 815~836.

Marco), 註7) Johann Gustav Knut Wicksell(1851-1926), Erik R Lindahl(1891—)註8)

註 6) Friedrich von Wieser에 의하면 租稅의 原理는 主觀的 또는 個人的 價値의 觀念에 의해서 決定된다. 分配, 負擔能力 및 犧牲이라고 하는 諸性質은 本質的으로는 個人의 價値決定의 例證이다. 즉 課稅는 Gossen의 飽和의 法則 및 限界效用의 法則에 의하여 決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累進稅의 窮極的 基礎는 欲望의 一般的 範圍에 있어서 具現되어야할 것이다, 事實上 近代租稅政策의 傾向은 經濟價値 및 그 法則에 있어서 確固한 理論上의 根據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Friedrich von Wieser; Theorie der gesellschaftlichen Wirtschaft "Grundriss der Sozialökonomik, I, 1914,, Ss. 415~426)

註 7) Antonio de Viti de Marco도 財政現象을 純經濟現象으로서 說明한다. 그에 의하면 財政問題解決을 위하여 보다 重要하고 基本的인 認識을 주는 科學은 國民經濟理論이다. 私經濟學은 個人欲望의 充足에 向하는 各人의 行爲를 다루나 財政學은 集合欲望의 充足에 向하는 國家의 行爲를 論한다. 이러한 行爲는 國民經濟領域에 있어서의 國家行爲이다. 이리하여 그는 財政學의 價値概念을 私經濟에서 公經濟의 領域에 移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科學은 生産되어야할 公的 分配의 選擇, 그 數量의 決定, 費用의 消費者 割當등이 이러한 價値概念에 基礎해서 되기 때문에 어떠한 條件에 의해서 國家의 生産行爲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硏究하였다. 따라서 마치 私經濟가 가지는 問題가 私的 財貨의 生産 및 消費理論에 의하여 解決을 보는것과 같이 財政의 모든 問題는 公的財貨의 生産 및 消費理論에 의해서 決定된다. 個人 대신에 國家가 個人欲望대신에 集合欲望이 問題로 되는데 不過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集合欲望은 社會的 公同生活의 事實에 의해서 共同體에서 생기는 欲望이다. 그러나 이 欲望은 結局 個人에 의하여 感知되는 것이다. 그래서 集合欲望이든가 個人欲望은 이들의 起源은 個人의 마음속에 存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Antonio de Viti de Marco는 財政學의 基礎로서 集合欲望을 論하였으나 그것은 獨立的 論理概念이 아니라 그 發生의 過程에 있어서 또 起源의 始初에 있어서 이미 個人欲望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集合欲望을 支配하는 原理는 結局 個人欲望의 原理 그 自體인 것이다.

(Antonio de Viti de Marco; Grundlehren der Finanzwirtschaft, Ss. 2~5)

註 8) E. Lindahl에 의하면 財政學의 課題는 우선 公經濟를 經濟的으로 記述한 뿐만 아니라 이것을 心理的인 根本要素로서 생긴 것으로서 說明하는 일이다. 이것은 勿論 心理主義價値論이 가지는 方法論的 見地의 採用을 意味한다. 다음으로 公經濟를 因果的으로 說明하는 일이다. 이것은 私經濟의 現象과 같으며 公經濟의 現象을 經濟的 衝動力에 돌리고 이것에 同一한 經濟的 原理를 適用해 함으로써 可能케 된다. 國家經濟는 國家의 經濟的 活動이기 때문에 其他의 經濟的 行爲와 같이 經濟的欲望에 의해서 惹起된다. 거기에서 이러한 欲望의 크기의 決定이 問題이다. 이리하여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의 經濟的 價値評價에 到達한다. 이러한 評價에 따라 經濟計劃은 成就된다. 때문에 財政問題는 이와 같은 純經濟的 見地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다.

E. Lindahl은 이와 같은 立場에서 現實財政理論의 問題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여 說明하고 있다. 즉 ① 公的財貨 ② 公的欲望 ③ 公的財貨의 價値 ④ 公的財貨의 價格. 그리고 公共財貨의 價格은 限界效用에 照應한다고 그는 說明한다.

이리하여 E. Lindahl에 있어서는 財政學이 問題로 하는것이 公的財貨 公的欲望임에도 不拘하고 이와같은 것을 支配하는 原理로서는 私經濟의 原理와 同一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財政現象을 純理論的으로 說明할 수 있는 所以라고 생각하고 있다.

(E. Lindahl; Die Gerechtigkeit der Besteuerung, Ss. 24~98 阿部博士著「租稅の理論と其分配原理」211~221面 參照).

은 大體的으로 Emil Sax와 같은 立場을 取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功利主義哲學에 結付시킨 사람이 Thomas. N. Carver와 Francis. Y. Edgeworth였던 것이다. 이 兩者의 最小犧牲說을 前述한 平等犧牲說의 反省과 效用理論과의 結合形態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即 平等犧牲의 理念을 各人의 條件的 差異에 基礎하여 展開하고 이것을 效用槪念의 分析과 結付시킨 것이 말하자면 最小犧牲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最犧牲說에 대하여 어떠한 批判이 賦與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Thomas. N. Carver의 理論에 대하여 말하자면 前述한바와 같이 그는 租稅을 가지고 害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個人의 側面에서 말하면 租稅는 價値의 喪失이기 때문에 損害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功利의 原則에서 본다면 이와같은 損害는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租稅에서 惹起되는 損害는 二重的으로 나타나게 된다. 第一은 이것을 支拂하는 個人의 犧牲이며 第二는 企業 또는 企業意欲에 미치는 壓迫이다. 이러한 2個의 犧牲의 總和를 最小로 하는 것이 功利의 原則에 合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問題는 이 2個의 犧牲을 分離하는 點에 있다. 이와 같이 犧牲의 種類를 2個로 分離한 것은 論理의 破綻이라고 할 수 있다. Thomas. N. Carver는 第1의 犧牲 即 納稅者에 對한 直接的 犧牲을 主潮로 하여 分析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그가 上述한 바와 같이 圖表에 의한 說明을 보면 極히 明瞭하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에 의하여 얻은 結論은 Thomas. N. Carver에 의하면 實際的으로는 妥當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結論에 基礎를 둔 租稅의 分配는 一般產業을 壓迫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即 第2의 間接的 影響을 考慮하여 이 2個의 犧牲을 同時에 考察함으로써 適當한 分配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分明히 論理의 矛盾이 아닐 수 없다. 왜냐 하면 第2의 間接的影響을 考慮한 租稅分配의 原理는 이미 第1의 分析에 의하여 얻은 結論과 背馳된다. 더구나 第1의 結論을 推進해 나아가면 第2의 原則과 衝突하게 된다. 말하자면 論理의 自己矛盾 또는 自己崩壞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Thomas. N. Carver에 比하면 Francis. Y. Edgeworth의 理論은 純粹하고 透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勿論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前述한바와 같이 Francis. Y. Edgeworth는 限界效用說 效用曲線의 分析에 의하여 純粹한 數理的 說明을 提示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問題의 中心點은 個人效用의 分析이 租稅現象에 있어서와 같은 社會價値論의 基幹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立場에 있다. 이와 같은 것은 否定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던 問題는 社會價値槪念의 硏究로서의 限界效用說이 成立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Francis. Y. Edgeworth의 理論은 以上의 意味의 限界效用說과 같은 運命共同體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이 根本的인 批判이 Thomas. N. Carver의 第1原理의 경우에도 妥當하다는 것은 여기서 再論할 必要도 없다.

Arthur Cecil Pigou(1877—)도 역시 課稅의 窮極原理를 最小犧牲說에서 追求하였던 것이다. 即 그는『最小犧牲이 課稅의 窮極이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고 하며 또『最小犧牲說이 옳다는 것이 나에게 直感的으로 直接 賦與되는것 같이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思想의 基礎로서 功利主義를 取하지 않고 그의 全經濟理論을 規定하는 厚生論을 論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모든 政府活動은 될 수 있는 限 市民의 厚生을 높이게끔 規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모든 法制上에서 判斷되어야할 規準이다. 租稅法도 勿論 이러한 法則의 一部이다. ……經濟學에 關한 限 最大量의 厚生은 모든 곳에 있어서 政府의 正當한 目的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租稅의 特殊領域에 있어서는 이러한 一般的 原理는 最小犧牲說에 一致한다.』[註9]는 것이다.

勿論 功利主義가 厚生論에 代入되드라도 以上의 批評에 變化는 없다. 단지 A. C. Pigou가 個人主義的 功利論을 廢棄하고 社會的 目的을 核心으로 하는 厚生論을 問題의 全般的 規定으로 하는데에 財政理論의 社會性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功利主義財政學을 根本的으로 批判할 뿐만 아니라 더욱 財政에 있어서의 社會理論的 Begründung의 必然性을 提示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財政學을 社會理論的으로 說明내지 分析하려는 一聯의 諸理論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功利主義的 財政理論은 時代的 推移에 따라서 社會的 財政學으로 登場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또한 現代國家의 目的이 福祉社會建設을 위하여 努力하는 目的意識的인 公的 欲望과도 一致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끝)

註 9) A. C. Pigou; A Study in Public Finance, 1928, pp.59~60.